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 상권 -

최효미·김은영·박은정·김태우·김길숙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 상권 -

저 자

최효미, 김은영, 박은정, 김태우, 김길숙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길 속 (삼육대학교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5-19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 761-003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132-6 [94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와 정부 지원금 수혜 여부,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는 기초 통계 자료로, 지난 2018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25년 8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2025년 연구는 보고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조사 관련 연구 내용은 상권, 자료 분석 관련 연구 내용은 하권으로 분권하여 제작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생활비 지출 실태, 정부 지원금 수혜 등 상세하고도 방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자료이다. 또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패널 조사 자료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매해 신생아(당해년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 표본 가구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패널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장점이 있다. 2025년 본조사에서는 1,830가구와 가구내 영유아 2,452명이 조사되었으며, 부스터표본 조사로 153개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2025년 연구에서는 2018~2024년까지 구축 완료된 자료를 활용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 기초 분석 자료뿐 아니라, 농어촌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및 부모급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까다롭고 민감한 설문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응답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주신 연구진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일러두기

- 이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로, 2025년도 연구는 상하권으로 분권 제작됨.
 - 상권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포함하며, 하권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을 다루고 있음.
 - 기존에는 설문내용만을 분권 제작하였으며, 본문 내용은 하나의 보고서 안에 파트 구분을 두어 발간함. 전반부는 당해연도 조사 관련 내용이 제시되고, 후반부는 전년도 자료까지를 활용한 분석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짐.
 - 이에 2025년 연구는 조사 관련 파트와 분석 관련 파트를 구분하여, 분권하여 제작함으로써 각 보고서의 가독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림 1] 2025년 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연구 내용	보고서 구성
KICCE 소비실태 조사_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 설계 - 설문의 구성과 변화 - 조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보고서 상권
기초 분석 (2018~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변화 (생활비 지출 및 주요 가계 지표 지수) -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보고서 하권 II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보고서 하권 III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 	보고서 하권 IV장
심층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육아지원 요구 * 2024 부스터표본 조사 	보고서 하권 V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효과성 분석(출생코호트 비교) * 2022~2024 데이터 활용 	보고서 하권 VI장

주: 서론, 연구배경, 정책 제언 등은 공통 사항으로, 지면 관계상 생략.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3차년도에 속하는 연구로,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진행될 예정인 연속과제임.

- ‘KICCE 소비실태조사’ I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되었으며, 2023년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연구가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 중임.
- 연구과제명이 매년 변동함에 따르는 혼선을 줄이고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차수의 구분은 ‘KICCE 소비실태조사’ I기와 II기를 망라하여 조사 뒤에는 조사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매년 수행되었던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연구 과제명은 다음과 같음.

연구 기수	조사 차수	조사 년도	연구과제명	조사명
I기	1차	2018년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
	2차	2019년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
	3차	2020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0
	4차	2021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5차	2022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II기	1차	2023년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2차	2024년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3차	2025년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주: I기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총괄한 연구과제명을 기준으로 정리.

상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요약	1
I. 서론	9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조사 목적 및 필요성	11
2. 조사 내용	13
3. 연구 방법	14
4. 용어 정의	16
5. 저소득 영유아 가구 기준 및 지원 정책 현황	18
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개요	37
1. 조사 설계	39
2. 설문지 구성과 변화	47
I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응답자 특성	67
1.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 표본추적률	69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조사 응답자 특성	72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부스터표본 조사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1
부록	85
부록 1. 2025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85



표 목차

〈표 Ⅰ-2-1〉 2025년 주요 조사 내용	13
〈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15
〈표 Ⅰ-4-1〉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 용어 정의	16
〈표 Ⅰ-4-2〉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범주	17
〈표 Ⅰ-4-3〉 영유아기 육아시간 지원 제도 범주	18
〈표 Ⅰ-5-1〉 기준 중위소득(2025)	21
〈표 Ⅰ-5-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2025년)	21
〈표 Ⅰ-5-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2
〈표 Ⅰ-5-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개요	22
〈표 Ⅰ-5-5〉 영양플러스사업 개요	23
〈표 Ⅰ-5-6〉 영양플러스사업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24
〈표 Ⅰ-5-7〉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25
〈표 Ⅰ-5-8〉 영양플러스사업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25
〈표 Ⅰ-5-9〉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26
〈표 Ⅰ-5-10〉 아이돌봄지원사업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27
〈표 Ⅰ-5-11〉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개요	28
〈표 Ⅰ-5-12〉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개요	29
〈표 Ⅰ-5-13〉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내용(2025)	30
〈표 Ⅰ-5-14〉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30
〈표 Ⅰ-5-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32
〈표 Ⅰ-5-16〉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 현황: 중앙부처 지원 사업	35
〈표 Ⅱ-1-1〉 연차별 조사 대상 연령(막내 자녀 연령 기준)	42
〈표 Ⅱ-1-2〉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43
〈표 Ⅱ-1-3〉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별 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 2024년)	44
〈표 Ⅱ-1-4〉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별 영유아 가구 수 (가계동향조사 영유아 가구 비중 적용)	44
〈표 Ⅱ-1-5〉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방법 변화	47
〈표 Ⅱ-2-1〉 본조사 설문지 개요(1~8차년도)	49

〈표 II-2-2〉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 (2019~2024년)	53
〈표 II-2-3〉 가구용 설문 비교(1~7차년도):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 ...	57
〈표 II-2-4〉 가구용 설문 비교(1~8차년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62
〈표 II-2-5〉 아동용 설문 비교(1~8차년도): 영유아	65
〈표 III-1-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5년) 표본 가구수 및 추적률 ...	70
〈표 III-1-2〉 조사방법별 응답자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71
〈표 III-2-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조사 가구 표본: 막내자녀 연령별	72
〈표 III-2-2〉 소비실태조사(2018~2025년) 영유아 출생연도별 표본 (아동용 설문 조사 표본 기준)	73
〈표 III-2-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부스터표본(저소득 가구) 특성	74



그림 목차

[그림 Ⅰ-2-1] KICCE 소비실태조사(Ⅱ기 조사) 연차별 추진 계획(안)	13
[그림 Ⅱ-1-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표본 구성	39
[그림 Ⅱ-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	41
[그림 Ⅱ-1-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 수행 절차	45
[그림 Ⅲ-1-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5년) 표본 가구 수 및 추적을 ..	70

1. 서론

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조사 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는 2018년 이후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8차년도(Ⅱ기 3차년도) 연구로, 상권인 이 보고서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수행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포함.
 - 매년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정부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의 변화,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매해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설문을 추가 구성하는 등 정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꾸준히 구축함.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영유아 가구 표본에 대한 본조사를 꾸준히 실시함과 동시에 부스터표본으로 저소득 가구를 표집하여 조사함.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의 분포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조사대상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변화 양태를 잘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 지난 7년간의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매우 적어지는 결과가 발견됨.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행태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특성만을 반영하게 될 위험이 있고, 양육 부담이 더욱 가중될 위험이 높은 저소득 가구의 정책적 필요와 요구 분석에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함.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부스터표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나. 조사 내용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는 크게 'KICCE 소비실태조사' Ⅱ기 3차시(전체 기준 8차년도)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 대상의 본 조사와 부스터표본(저소득 가구)로 구성됨.

- 영유아 가구 대상의 본 조사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 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조사표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설문 및 연구 내용
본조사 (연속조사)	조사개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 - 추적(패널) 조사, 대체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 가구 특성(소득, 주거 등) 및 아동 특성 파악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현황 - 영유아 관련 각종 지원금 수급 현황 영유아 가구 가계 소비 지출 및 양육비용 - 가구당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 가구 소비지출 현황(비목별 조사)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정책적 요구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실태 -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가구용 설문) - 육아서비스 지원 요구
	육아시간 지원제도 활용 및 가정양육	- 육아시간 제도(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활용 - 가정양육 관련 현황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선호
부스터표본 (부가조사)	본조사 표본 이외 추가 표집	저소득 영유아 가구 - 기본 설문은 본조사 설문과 동일 ※ 2025년 부스터표본은 표본의 보강(분석을 위한 적정 관측치 확보)에 초점이 있으며, 설문 문항은 본조사 표본과 동일 -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추가 지원 요구 등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올해 연구에서는 특히 부스터표본 구축과 관련하여 저소득 가구 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 및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 등에 관한 문헌을 추가적으로 검토함.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는 본조사와 부스터표본에 대한 부가조사로 구분되며, 2025년 부스터표본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임.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연구의 방향 설정, 조사 설계,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10회에 걸쳐 실시함.

□ 기타: IRB 심의

-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의 생명윤리준수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2025년 6월 23일 최종 심의를 완료함.
-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는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사시점 2년 후 데이터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용목적 및 활용내용 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됨.

라. 용어 정의

□ 양육비용 산출 기준 및 조작적 정의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은 크게 가구당 양육비용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구분됨.
- 양육비용에 포함되는 비목은 식비(외식비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어린이)보험 총 10개 비목(세목포함 16개)임.

□ 육아서비스 범주 및 분류

- 2023년에서 정의한 육아서비스 범주와 동일하나, 올해 연구에서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성격이 육아서비스와는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육아시간 지원 제도’ 범주로 별도 구분함.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육아서비스는 크게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 어린이 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이 있으며, 학원 등 총 8개 항목의 시간제 교육 서비스, 일시보육 등 총 3개의 기타 육아서비스, 가구용 설문에서 조사하는 개별돌봄서비스,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됨.
- 각 서비스별로 이용률, 이용시간, 이용비용, 일부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 등의 방대한 내용을 매년 조사하고 있음.

□ 육아시간 지원 제도

-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는 출산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법정 제도 이외 직장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도 총 6개 유형으로 구분됨.

마. 저소득 영유아 가구 기준 및 지원 정책 현황

□ 저소득 영유아 가구 기준

- 저소득 가구의 기준은 응답자의 소득 응답 값이 아닌 실제 저소득 가구 대상 정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인 선별 기준으로 하되, 목표표본 미충족 시 가구소득 관련 스크리닝 문항에 모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보완적으로 응답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저소득 가구 추가 모집 표본의 조건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이 5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로, 일시적 소득 감소 가구를 제외하고, 해당 가구가 정책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이 아닌 이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답 대상자 여부를 판별함.
- 부스터표본(저소득 영유아 가구) 우선 선정 기준인 정책 수혜 여부의 기준 정책은 ①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②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③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형 지원,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⑤ 지자체의 저소득 가구 육아 지원, ⑥ 교육부의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⑦ 국세청의 자녀장려금(세제 지원) 등임.

□ 저소득 영유아 가구 기준 종합 비교

-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에 비해서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육아지원 정책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임.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 및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수준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조제분유 지원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저소득 가구(‘가’형)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
 - 디딤통장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의 경우에도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가구)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세제지원에 해당하는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으로,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583만원 수준의 비교적 높은 가구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임.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 표본 추적 및 구축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표본은 본조사 표본과 부스터표본으로 구분됨.
 - 본조사 표본은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표본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를 추적 조사한 패널표본과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 중 추적에 실패한 표본을 대체하여 추가 표집되는 대체 표본, 신생아 표본으로 구성됨.
 - 부스터표본은 특정 시점에만 별도 표본을 구성하여 횡단적으로 조사하는 자료로, 2025년에는 저소득 영유아 가구 150가구를 추가 구축 예정이었음.

□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의 조사 도구는 2019년 조사까지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TAPI)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 이후 조사 도구를 종이설문(PAPI)으로 전환하고, 조사 방식 또한 설문의 유치 혹은 전화조사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함.

- 2025년 조사에서는 젊은 응답자들과 면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사도구를 응답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25년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발굴 자체가 매우 어려운 대상으로, 적정 표본 수 확보가 모드효과 보다 더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조사도 조사 방식이 아닌 다양한 채널을 통한 모집 방식(응답자 희망시, CAWI, CATI 등 온라인 조사 병행)으로 응답자를 구성하였음.

□ 조사 시기는 2023년 조사까지는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실시되었으나, 2024년 조사부터 조사 시기를 7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로 조정하였고, 2025년 조사 또한 7월~10월에 조사가 실시됨.

나. 설문 구성과 변화

□ 본조사 설문 개요

- 2025년(8차년도) 조사도 가구 및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설문이나 가구의 소비실태를 파악하는 소득과 지출에 관한 기본적 문항은 유지함.
- 2025년(8차년도) 조사에서는 기존의 농어촌 관련 문항을 대거 삭제하고, 정책의 시의성 및 필요성이 떨어지는 설문도 상당 부분 정리하였음.
- 반대로 2025년 부스터표본인 저소득 가구를 식별하기 위한 문항과 저소득 가구 정책에 인지 및 수혜 등을 질문하는 설문을 일부 추가함.
- 그 외에는 조사 기간이 5~8월에서 7~10월로 미뤄짐에 따라 일부 문항의 기준 기간이 조정되었으며, 2024년(7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지자체 및 직장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문항 등은 1년 정도 유지하였음.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응답자 특성

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조사 표본추적률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본조사 응답 표본은 1,830가구로, 표본추적률은 89.1%였으며, 표본 추적에 성공한 패널 표본이 1,404가구, 대체표본이 172가구, 신생아 표본이 254가구임.
- 이는 2018년 조사 대비 182가구가 증가한 수치임.
- 조사방법별 응답 표본을 살펴보면, 대면면접조사가 71.3%(1,305가구)로 대부분이며, 방문한 후 설문의 일부를 남겨두고 온 후 결과를 수거하는 방식인 방문+유치조사가 20.2%(369가구)임.
-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저소득 가구,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방문+유치 조사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조사 응답자 특성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표본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830가구 중 막내자녀 연령 기준 0세가 167가구(9.1%), 1세 16.1%, 2세 16.3% 등으로 조사됨.

- 아동용 설문에 응답한 아동의 수는 2025년 2,452명으로 2024년 2,434명에서 1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 설문 응답자 수는 2025년 보육연령 기준 5세인 2019년생이 444명(18.1%)로 가장 많고, 연령이 어릴수록 응답자 수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부스터표본 조사

- 2025년에는 부스터표본으로 저소득 영유아 가구 153가구를 조사 완료됨.
 - 부스터표본의 가구소득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299만원 이하 가구가 47.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399만원 34.0% 등임.
 - 이 연구에서 저소득 가구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 수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구소득이 500~599만원인 경우도 일부 표본에 포함됨.
 - 저소득 정책별로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은 가구가 90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I

서론

- 0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조사 목적 및 필요성
- 02 조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용어 정의
- 05 저소득 영유아 가구 기준 및 지원 정책 현황

I. 서론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조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2018년 이후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8차년도(Ⅱ기 3차년도) 연구로, 상권인 이 보고서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수행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포함하였다¹⁾.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7년에 걸쳐 매년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정부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의 변화,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으며, 매해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설문을 추가 구성하는 등 정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꾸준히 구축해왔다(최효미 외, 2024). 특히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를 비목 수준에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초 통계자료이다. 또, 2023년부터 시작된 Ⅱ기 조사는 본조사와 함께 부스터표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2023년 부스터표본은 무자녀 가구 및 임산부 가구였으며, 2024년에는 농어촌 지역(도농복합지 제외)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최효미 외, 2024).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영유아 가구 표본에 대한 본조사를 꾸준히 실시함과 동시에 부스터표본으로 저소득 가구를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의 분포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조사대상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변화 양태를 잘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표본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의

1) 일러두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상권과 기 수집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을 포함하는 하권, 2권으로 분권하여 제작 예정.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매우 적어지는 결과가 발견된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영유아 가구의 표본 특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지,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추적 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편의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최효미 외(2023)는 II기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특성을 다른 조사 자료와 다각도에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계동향조사의 영유아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22년 기준 643만4천원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의 512만2천원에 비해 131만2천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최효미 외, 2023: 186). 또, 한국노동패널의 영유아 가구 기준 2021년 월평균 가구소득도 561만7천원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의 494만2천원보다 67만5천원이 높았다(최효미 외, 2023: 186). 즉,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영유아 가구 표본의 가구소득(명목비용 기준)은 2018년 461만5천원에서 2023년 551만3천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최효미 외, 2023: 127). 무엇보다 가계동향조사나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전체 표본의 소득 수준은 영유아 가구 표본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결혼 및 자녀 출산으로 이행하는 상황, 즉 표본의 선택 편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표본을 대표성 있게 표집한다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이 많이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행태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특성만을 반영하게 될 위험이 있다. 즉, 양육 부담이 더욱 가중될 위험이 높은 저소득 가구 표본이 점차 줄어들어 따라, 이들의 정책적 필요와 요구를 분석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가구 표본 1,773 가구 중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는 45 가구(2.6%)에 불과하였다(최효미 외, 2024: 158).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부스터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²⁾.

2) 단, 2025년에는 조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은 차년도인 2026년에 실시함.

2. 조사 내용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는 크게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3차시 (전체 기준 8차년도)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 대상의 본 조사와 부스터표본(저소득 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영유아 가구 대상의 본 조사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 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조사표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부터 실시되는 II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본조사 개요 및 부스터표본은 [그림 I-2-1]과 같다.

[그림 I-2-1] KICCE 소비실태조사(II기 조사) 연차별 추진 계획(안)

연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및 표본: 영유아 가구(추적 표본, 대체표본, 신생아 표본으로 구성됨) - 설문 종류: 가구용 설문(가구당 1종), 아동용 설문(아동당 1종) - 주요 설문 내용 (반복 조사) 가구 특성 변화, 육아 가구 생활비 등 지출 실태, 비목별 양육비용 지출 현황, 정부 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기관보육/교육, 사교육 포함),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가정양육 현황 등 (의의성 조사) 육아 지원 정책 변화에 인지 및 선호, 정책 지원 요구 및 제도 개선 방안 				
부스터 표본	무자녀 가구, 입산부 가구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	저소득 가구	-	-

주: 연차별 상황에 따라 2026년 이후 연구의 주제와 조사 표본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 연구소. [그림 I-2-1]을 수정 보완.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주요 조사 내용은 <표 I-2-1>과 같다.

<표 I-2-1> 2025년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설문 및 연구 내용	
본조사 (연속조사)	조사개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 - 추적(패널) 조사, 대체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 가구 특성(소득, 주거 등) 및 아동 특성 파악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현황 - 영유아 관련 각종 지원금 수급 현황 영유아 가구 가계 소비 지출 및 양육비용 - 가구당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 가구 소비지출 현황(비목별 조사)

구분		주요 설문 및 연구 내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정책적 요구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실태 -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가구용 설문) - 육아서비스 지원 요구
	육아시간 지원제도 활용 및 가정양육	- 육아시간 제도(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활용 - 가정양육 관련 현황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선호
부스터표본 (부가조사)	본조사 표본 이외 추가 표집	저소득 영유아 가구 - 기본 설문은 본조사 설문과 동일 ※ 2025년 부스터표본은 표본의 보강(분석을 위한 적정 관측치 확보)에 초점이 있으며, 설문 문항은 본조사 표본과 동일 -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추가 지원 요구 등

주: 설문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 연구소. <표 1-2-1>을 수정 보완.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설문 문항 작성과 심층 분석 등을 위해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특히 부스터표본 구축과 관련하여 저소득 가구 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 및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 등에 관한 문헌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이다. 앞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는 본조사와 부스터표본에 대한 부가조사로 구분된다. 본조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영유아 가구 한정)와 신생아 표본(2025년 상반기 출생아 및 2024년 하반기 출생아) 구축으로 이뤄지며, 추적 조사에 실패한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체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최효미

외, 2023). 2025년 부스터표본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설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II장 1절에 제시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조사 설계,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 도출 등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시	참석자	주요 자문 내용
1회	3. 10	조사 분야 2인	농어촌 조사결과 정리 방안 논의
2회	3. 17	육아 정책 분야 1인	연구 방향 설정(착수보고)
3회	3. 17	육아정책 분야 4인 및 조사 분야 2인	보육실태조사와 소비실태조사 적용 논의
4회	4. 30	조사 분야 2인	실질변수 조정에 관한 논의
5회	5. 30	조사 분야 4인	2024년 본조사 결과 및 농어촌 결과표 논의
6회	6. 18	경영학, 법학, 사회복지 등 3인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관련 자문
7회	6. 19	육아정책 분야 1인, 사회복지 분야 2인	중간보고
8회	8. 1	조사 분야 3인	조사진행 상황 점검
9회	9. 4	조사 분야 2인	조사결과 재산출 및 오류 확인
10회	10. 21	사회복지 분야 2인	최종보고

주: 전문가 자문회의는 하권의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현황(표 I-3-2)과 중복되는 사항임.

라. 기타: IRB 심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의 생명윤리준수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2025년 6월 23일 최종 심의를 완료하였다. 연구승인번호는 ‘KICCEIRB-2025-제02호’이며, 연구승인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2023~2027년)는 매해 IRB 승인을 거쳐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는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용목적 및 활용내용 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시점 2년 후 데이터부터 신청이 가능하다³⁾.

3) 예: 2025년 데이터는 2027년부터 신청가능함.

4. 용어 정의⁴⁾

설문 및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래 제시된 주요 용어는 시계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이전년도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준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가. 양육비용 산출 기준 및 조작적 정의

‘KICCE 소비실태조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산출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양육비용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은 크게 가구당 양육비용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구분된다(최효미 외, 2023: 35~37). 그 사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은 용어 정의가 차수별로 약간씩 변경되어 혼선이 있어왔으나, 2023년 연구에서 이를 가구당 양육비용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구분하기로 정리함에 따라, 2025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용어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였다. 한편, 양육비용에 포함되는 비목은 식비(외식비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어린이)보험 총10개(세목포함 16개)이다(최효미 외, 2023: 35~37).

〈표 I-4-1〉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 용어 정의

2022년 이전 연구		2023년 이후 연구	조작적 정의
총 양육비용	⇒	가구당 양육비용	가구 내 모든 자녀(초등 이상 자녀 포함)에게 소요된 전체 양육비용 *자녀별 양육비용의 합산액
영유아 양육비용	⇒	(삭제)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자녀별로 해당 영유아 자녀 한명을 양육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	⇒	자녀별 양육비용 (별도로 산출 안함)	가구 내 각 자녀별로 해당 자녀(자녀 연령 무관)를 양육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주: 자녀별 양육비용은 가구당 양육비용 산출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별도로 산출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음.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I-4-2〉 인용.

4) 용어의 정의는 보고서 및 데이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으로, 커다란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전년도 기준을 준용하는 바, 이전 보고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 인용하고 있음을 밝힘.

나. 육아서비스 범주 및 분류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육아서비스의 범주는 <표 I-4-2>와 같으며, 이러한 범주는 2023년에서 정의한 육아서비스 범주와 동일하다. 다만, 기존에는 육아서비스 범주에 육아시간 지원 제도를 포함하여 분류하였으나, 올해 연구에서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성격이 육아서비스와는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육아시간 지원 제도’ 범주로 별도로 구분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육아서비스는 크게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이 있으며, 학원 등 총 8개 항목의 시간제 교육서비스, 일시보육 등 총 3개의 기타 육아서비스, 가구용 설문에서 조사하는 개별돌봄서비스,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각 서비스별로 이용률, 이용시간, 이용비용, 일부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 등의 방대한 내용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표 I-4-2>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범주

구분	육아서비스 종류	설문종류
반일제 이상 기관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④ 반일제이상 기타 기관(유아스포츠탄, YMCA 등)	아동용
(시간제) 교육 서비스	① 문화센터, ② 학원, ③ 방문형 학습지, ④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⑤ 비방문 학습지, 교구활동교육 ⑥ 개인 및 그룹지도, ⑦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⑧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아동용
기타 육아서비스	① 일시보육, ② 키즈카페, ③ 비정기 체험활동	아동용
개별돌봄서비스	①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지원), ② 민간육아도우미(학습시터, 놀이시터 포함), ③ 조부모, ④ 조부모 이외 친인척 돌봄	가구용
부모직접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① 부모 직접 돌봄, ② 미디어 활용시간, ③ 육아용품 대여서비스(장난감, 도서 대여 등), ④ 육아용품 제공서비스(교재/교구 꾸러미 등), ⑤ 양육지원_부모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	가구용

주: 육아서비스 종류 및 범주는 조사 차수에 따라 약간씩 변동되었으며, 특히 2019년~2021년 조사에는 초등 돌봄 관련 육아서비스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음.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I-4-3>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

다. 육아시간 지원 제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법정 제도 이외 직장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도 총 6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응답 대상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이용 경험과 관련된 설문은 취업자 중에서도 임금근로자만을 응답 대상으로 한다. 단,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 문항은 영유아 가구 전체에 질문하는 문항들이다. 육아시간 지원 제도 설문은 2021년(4차년도) 조사부터 설문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최근 관련 법령 및 제도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으므로, 동일 제도에 대한 설문 문항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지원 제도의 내용을 감안하여 자료를 해석하여야 함을 주지하는 바이다.

〈표 1-4-3〉 영유아기 육아시간 지원 제도 범주

구분	육아시간 지원 제도 유형	설문종류
육아시간 지원 제도	① 출산휴가,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⑤ 직장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육아시간 지원 제도 ⑥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구용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1-4-3〉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

5. 저소득 영유아 가구 기준 및 지원 정책 현황

이 절에서는 2025년 부스터표본인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정의와 저소득 가구 대상의 육아지원 정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가. 저소득 영유아 가구 기준

2025년 부스터표본 대상인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정책 지원 대상 저소득 가구의 선정은 가구소득

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산 상태 등을 동시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뿐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감소가 아닌 어느 정도 항구성이 있는 상태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응답자가 특정 시점에 응답하는 가구소득만으로 저소득 가구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기준을 응답자의 소득 응답 값이 아닌 실제 저소득 가구 대상 정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컨대,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가구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부스터표본(저소득 가구) 응답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이 생애초기 평등한 출발선 보장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지원 대상을 저소득 가구로 특정한 정책 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즉, 소득기준만으로는 정책 대상에 해당하지만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표본의 선택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구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의 ‘가’형 지원 대상으로 이 연구의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소득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만, 실제 해당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책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연구의 부스터표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수혜자는 자녀의 연령이 기저귀·조제분유를 필요로 하는 영아기인 경우만 지원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임에도 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응답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실제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체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응답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러한 지원 대상 자격 조건과 실제 수혜 여부 사이의 불일치 문제뿐 아니라, 애초 영유아 가구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문제, 즉 가구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아이를 낳지 않고 출산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경우 등이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저소득 영유아 가구 표본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의 수혜 여부(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우선적인 선별 기준으로 하되, 목표표본 미충족 시 가구소득 관련 스크리닝 문항에 모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보완적으로 응답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저소득 가구 추가 모집 표본의 조건은 우선적으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이 5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로, 가구소득의 산정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으로 하여, 일시적 소득 감소 가구를 제외하였다. 이에 더하여 해당 가구가 정책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이 아닌 이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것인지, 혹은 해당 정책의 이용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인지, 소득이 아닌 다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답 대상자 여부를 판별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부스터표본(저소득 영유아 가구) 우선 선정 기준인 정책 수혜 여부의 기준 정책은 ①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②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③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형 지원,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⑤ 지자체의 저소득 가구 육아 지원(예: 산후조리비 지원, 육아보조수당 등), ⑥ 교육부의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⑦ 국세청의 자녀장려금(세제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육아정책 분야에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 지원 사업인데, 각 제도별로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조금씩 상이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의 선별 기준과 지원 내용 등은 이어지는 '나'항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부스터표본 주요 선정 기준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표 I-5-1>을 참조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영유아 가구 중 1인 가구는 없을 것이므로, 2인 가구 기준 393만2,658원 이상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영유아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월평균)은 각 502만 5,353원, 609만7,773원으로, 이 연구의 저소득 가구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251만2,677원, 4인 가구 기준 304만8,887원이다. 단, 조사 당시에는 가구소득이 응답자의 자가 응답이면서 재산요건이 감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10만원 단위에서 구간을 구분하여 3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250만원이하, 4인 가구의 경우에는 300만원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50만원이하인 경우를 모집 대상으로 하였다.

〈표 I-5-1〉 기준 중위소득(2025)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자료: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추이(2025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_Detail.do?idx_cd=2762(인출일: 2025. 6. 2.).

나.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 현황 및 지원 대상 기준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먼저 가장 분명하게 구분되는 저소득 가구 대상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를 생각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가구원 수당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표 I-5-2〉와 같다. 즉,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때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적용되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표 I-5-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2025년)

단위: 원

급여 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중위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중위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중위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중위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인출일: 2025. 6.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표 I-5-3〉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5-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자료: 보건복지부(2025b).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p.5-6, 21.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b: 341). 지자체 지원(서울 30%, 기타 50%)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군구(보건소)는 바우처 비용 지급을 위해 교부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약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25b: 10).

2025년 기준 9만5천명 대상 434만5,300만원의 예산으로(보건복지부, 2025b: 10),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결정 통보일 익일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5b: 362).

〈표 I-5-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개요

구분	기저귀 바우처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해당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¹⁾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²⁾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특별질병 ³⁾ ,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구분	기저귀 바우처	조제분유 바우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지원 금액	월 9만원(가유형)	월 11만원(다유형) ⁴⁾
	월 20만원(나유형)	
신청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주: 1)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청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3)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등
4)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신청 시 지원
자료: 복지포.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fareInfo/moveTWAT52011M.do?wfareInfol=WLF00000092>(인출일: 2025. 9. 17.).

3)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와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하여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30).

〈표 I-5-5〉 영양플러스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¹⁾	- 0~5세(생후 72개월)까지 영유아,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출산(출산 후 6개월까지)·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되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가능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지역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하향 조정 가능 ²⁾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으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영양교육 및 상담: 보건소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대면,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 실시

구분	내용
	- 보충식품 공급: 식품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굴/오렌지주스 등의 식품 공급
지원 기간	- 대상자의 사업 수혜 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³⁾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또는 조부모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15조(영양개선),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 주: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 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나 대상으로 등록하여 영아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영양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2) 기본 지원 대상의 소득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함.
3) 대상자가 최대 사업 수혜 기간(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유부(출산부 제외)는 최대 수혜 기간(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 등록된 영아의 평가 시점(생후 12개월)까지 수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사업참여 기간이 3개월 이상 확보 가능한 대상으로 선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5).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p.32-33, 44, 67.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33).

〈표 I-5-6〉 영양플러스사업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3,147,000	4,021,000	4,879,000	5,687,000	6,452,000	7,19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5).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p.33.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한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32). 대상자 선정기준(거주, 생애주기, 소득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 자격이 인정되지만, 확보된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45).

〈표 I-5-7〉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우선순위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2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6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7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주: 1) 영양의학적 위험: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및 임신/출산경력 관련 사항 등 기타 영양위험요인

2) 적절한 식생활 양상: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 위험요인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5).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p.45.

또한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대상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요청된 대상, 과거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대상, 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유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다태아,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다문화가족 등의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46).

〈표 I-5-8〉 영양플러스사업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3,267,000	3,964,000	4,621,000	5,243,000	5,843,000	6,443,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5).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p.47.

4)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후 3~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된다(여성가족부, 2025: 21).

〈표 I-5-9〉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¹⁾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12세 아동
지원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 돌봄서비스 - 기본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 중증장애 부모(조손가정 조부모 포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1,080시간) 적용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 아동의 병원 이동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돌봄 관련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이용 요금 ²⁾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2,180원/(시간제) 기본형 12,180원, 종합형, 15,830원/(질병감염아동) 14,610원/(기관연계) 18,600원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 ※ 기관연계서비스의 경우, 별도 정부지원 비용은 없음.
이용 시간	- 공통사항: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신청 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주: 1)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며,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함.

2) 아동 추가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되며, 야간 또는 일요일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유형별 세부 지원 금액은 〈표 I-5-10〉-〈표 I-5-15〉 참고 바람.

자료: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18-25, 29, 68-69, 72-77.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정부지원은 사업 종류별,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원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기준으로 한다. ‘가~라’형의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 ‘마’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5: 23).

〈표 I-5-10〉 아이돌봄지원사업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분 유형	기준 중위소득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가형	75% 이하	3,770,000	4,574,000	5,332,000	6,049,000	6,742,000	7,435,000
나형	120% 이하	6,031,000	7,318,000	8,530,000	9,678,000	10,787,000	11,895,000
다형	150% 이하	7,539,000	9,147,000	10,663,000	12,098,000	13,483,000	14,869,000
라형	200% 이하	10,051,000	12,196,000	14,217,000	16,130,000	17,977,000	19,825,000

자료: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23.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부 지원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영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및 가정 유형(일반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득 기준, 청소년 부모) 등에 따라 모두 다른데, 지면관계상 본고에서는 해당 내용은 생략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시간제서비스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여성가족부, 2025: 41).

5)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⁵⁾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운영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로 시작하여 2009년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지자체 국고보조금(서울 40%, 지방 70%)을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아동의 적립 내역을 확인하여 매칭금을 적립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대상은 0~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등으로 후원 등을 통해 아동이 일정 금액 적립 시 정부가 2배(최대 10만원)를 지원

5) 본 절의 사업 현황은 아동권리보장원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소개(<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를 참고하여 작성함(인출일: 2025. 9. 20.).

한다. 만 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 I-5-11〉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중복지원불가-지자체 유사사업 등 관련 내용 삭제)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 정부 매칭 지원금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지원 기간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p>「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p> <p>「아동복지법 시행규칙」</p>

자료: 보건복지부(2025a).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 pp. 49-51.

6)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유치원에 다

나는 경우 우선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소득요건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학비를 지원한다(교육부, 2025: 1).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 방과후 과정비+기타경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이 가능하다(교육부, 2025: 2-3).

〈표 I-5-12〉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p>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p> <p>*22년 1~2월생 입학한 유아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의 지원 대상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 차상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 한부모 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부담금 월 최대 20만원: 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p>※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 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p>
지원 기간	2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p>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p>「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제3조의 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p> <p>「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p>

주: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이 중단됨.

* '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1항)

자료: 교육부(2025).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4~5세 추가지원 포함). pp.11~12

〈표 I-5-13〉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내용(2025)

단위: 만원

구분	3세			4~5세			
	계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계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추가지원
국공립유치원	15	10	5	20	10	5	5
사립유치원(어린이집)	35	28	7	40	28	7	5

자료: 교육부(2025).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4~5세 추가지원 포함). p.1

7) 자녀장려금(세제지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국세청⁶⁾).

〈표 I-5-14〉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요건: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홀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따라 7,000만원 기준 미만인 가구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¹⁾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2.4억원²⁾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³⁾,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은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전년도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민)는 신청 제외됨

6)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인출일: 2025. 9. 22.\)](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인출일: 2025. 9. 22.)).

구분	내용
지원 내용	부부 총 급여액 등 합산액 금액 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100만원 차등 지원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10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10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500분의 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총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총당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1544-9944)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주: 1) 1세대(가구)의 범위·전년도 말 기준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입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자료: 1)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인출일: 2025. 9. 22.).
 2)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v2xPath=/ui/pp/index_pp.xml&tmlIdx=10&tm2lIdx=1003000000&tm3lIdx=1003030000(인출일: 2025. 9. 22.).
 3) 복지포.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bokjiro.go.kr/ssid=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ld=WLF00001148>(인출일: 2025. 9. 22.).

8) 공공요금 감면

이 외에 육아지원 정책은 아니지만 저소득 영유아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지원으로 각종 공공요금의 감면 지원 정책이 있다. 대표적인 저소득 가구 대상의 이용요금 감면 정책으로는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 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가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이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7).

- 7)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https://m.e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533&ccfNo=3&cciNo=3&cnPclsNo=1>(인출일: 2025. 6. 2.)

특기할만한 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가 아니라더라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8).

〈표 I-5-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구분	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여름철: 7, 8, 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천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신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8)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https://m.e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533&ccfNo=3&cciNo=3&cnpClsNo=1>(인출일: 2025. 6. 2.)

구분	내용	비고
	<p>받은 자(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p>-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p>	
도시가스요금 감면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지원	<p>-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p>-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p>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p>-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p> <p>-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p>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p>-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p> <p>*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p> <p>-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kotsa.or.kr</p>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5b). 202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pp. 482-483.

9) 저소득 영유아 가구 기준 종합 비교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에 비해서는 좀 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아동 대상의 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등의 경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어, 모든 영유아 자녀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육아지원 정책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앞서 부스터표본의 선별 기준으로 적용된 지원 제도 정도가 저소득 가구이면서 영유아 가구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의 다른 기준을 차치하고 소득 기준만을 생각할 때,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수준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제분유 지원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소득 기준은 기저귀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의 80% 수준이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저소득 가구('가'형)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디딤통장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의 경우에도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가구)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제지원에 해당하는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어,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583만원 수준의 비교적 높은 가구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단,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소득 영유아 가구 대상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I-5-16>과 같다.

〈표 I-5-16〉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 현황: 중앙부처 지원 사업

제도명	지원 대상	사업목적 및 개요	지원 내용	주무부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영아(0~24개월)를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6세까지)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영양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영양 상태 유지와 개선을 돕기 위한 국가 영양지원 프로그램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 패키지(6종) 제공	보건복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형 지원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등) 가형 지원은 중위소득의 75%이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형 지원은 중위소득의 75%이하)	시간제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의 이용 비용 지원: 가구특성 및 서비스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이용 금액의 90%~58%로 상이	여성가족부
디딤씨앗통장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저소득층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제도로 아동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보건복지부

제도명	지원 대상	사업목적 및 개요	지원 내용	주무부처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의 3~5세 유아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월 최대 20만원	교육부
자녀장려금 (세제 지원)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혹은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제도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국세청

- 자료: 1) 정부2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11000000500>(인출일: 2025. 6. 2.).
 2)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20300>(인출일: 2025. 6. 2.).
 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인출일: 2025. 6. 2.).
 4)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산형성(다담씨앗통장).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lid=1142>(인출일: 2025. 6. 2.).
 5)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https://blog.naver.com/moeblog/223813042371>(인출일: 2025. 6. 2.).
 6)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인출일: 2025. 6. 2.).

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개요

- 01 조사 설계
- 02 설문 구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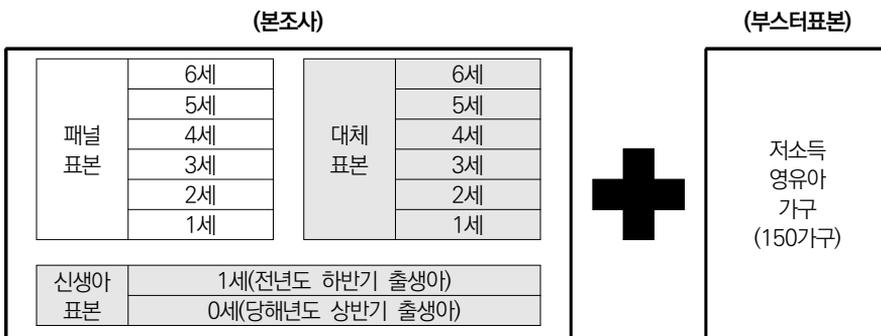
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개요⁹⁾

1. 조사 설계

가. 표본 추적 및 구축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조사 표본은 크게 본조사 표본과 부스터표본으로 구분된다. 본조사 표본은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표본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를 추적 조사한 패널표본과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 중 추적에 실패한 표본을 대체하여 추가 표집하는 대체표본, 신생아 표본으로 구성된다. 이때,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 중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령기가 되어 가구 내 더 이상 영유아가 없는 경우는 조사 대상 표본에서 제외된다. 한편, 본조사 표본의 추적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가구들은 가구용 설문과 함께 영유아기의 모든 자녀별로 아동용 설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II-1-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표본 구성



- 주: 1) 패널 표본은 전년도 조사에 이어 추적 조사 한 표본으로, 차년도에도 추적 조사를 실시(단, 6세 제외).
 2) 대체표본과 신생아 표본(회색음영)은 당해연도 신규 구축하여 차년도부터 추적 조사 실시.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표본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로, 2024년에 한해 조사함.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I-1-3'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함.]

9) 연속과제의 성격상 최효미 외(2024), III장의 내용을 포괄 인용하였음.

한편, 부스터표본은 특정 시점에만 별도 표본을 구성하여 횡단적으로 조사하는 자료로, 2023년에는 임신부 504가구와 무자녀 817가구에 대한 부가조사 자료가 구축 완료되었으며, 2024년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160가구를 부스터표본으로 추가 구축하였다. 2025년에는 부스터표본으로 저소득 영유아 가구 150가구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1) 본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본조사 표본은 이전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 첫째, 이전조사 차수 자료와 패널 자료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 패널 표본의 경우에는 전년도 조사 표본을 추적 조사한 표본으로, 조사 당해연도 기준 막내 자녀가 7세(초등1학년)인 경우는 표본 추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년도 조사 기준 대체표본의 경우에는 막내 자녀 연령이 6세이하인 경우에는 추적 대상 표본에 포함된다. 즉, 표본 추적의 원칙은 전년도 조사 성공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 추적률은 1차년도 원표본에 대한 추적률이 아닌 전년도 조사 표본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값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둘째, 전년도(2024년) 하반기 출생아와 당해연도(2025년) 상반기 출생아가 있는 영유아 가구 각 125가구 내외를 신생아 표본 가구로 추가 구축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기간이 당해연도 7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신생아 표본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상하반기에 각각 절반씩 조사하여, 매해 250가구 내외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셋째, 전년도 조사 기준 막내 자녀 연령이 0~5세였던 가구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당해연도(2025년)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조사 표본과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로 대체하여 표본의 마모를 보완하였다. 이때 대체표본은 조사 실패 가구(당해연도 조사 대상 가구이지만, 조사에 실패한 경우)와 자녀 수, 막내 자녀의 연령이 동일하고 해당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발굴하여 추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조사구 내 표본 특성에 맞는 영유아 가구가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2023년 조사부터는 대체표본 가구 조사구의 범위를 기존 표본과 동일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하였다.

[그림 II-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



주: 1) 굵은 점선은 추적 대상 표본 가구를 의미하며(전년도 6세를 추적 대상 표본에서 제외), 굵은 점선은 추적 조사에 성공한 표본의 당해연도 연령을 의미.
 2) 표본의 연령은 가구의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I-1-4] 인용.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축된 ‘KICCE 소비실태조사’ 각 차수별 본조사 표본의 막내 자녀 연령과 출생연도는 <표 II-1-1>과 같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은 2012년생(6세)~2018년 상반기 출생아(0세)까지를 표본 가구로 하고 있으며, 2019~2021년까지는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일부 연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⁰⁾. 2022~2024년에는 막내 자녀 연령이 6세이하인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024년은 1차년도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18) 당시 신생아 표본(0세)이었던 2018년생이 6세에 도달하는 해로, 조사 대상 아동의 영유아기(0~6세) 전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첫해였다. 2025년에는 2019년생이 추가적으로 6세에 도달하여 영유아기 전 연령의 변화가 고찰되는 두 번째 코호트가 되었다.

10) 막내 자녀 연령 기준 2019년에는 7세(초1), 2020년에는 8세(초2), 2021년에는 7세(초1)까지를 추적 대상 표본 가구로 보았음. 이는 초등 돌봄 등에 관한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II기 조사 연구의 부스터표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조사임.

〈표 II-1-1〉 연차별 조사 대상 연령(막내 자녀 연령 기준)

아동 연령		조사 차수									
출생 년도	출생 시기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추진 계획)	
2027	상반기										0세
2026	하반기										1세
	상반기									0세	1세
2025	하반기									1세	2세
	상반기								0세	1세	
2024	하반기								1세	2세	3세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2023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2022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21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20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9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8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6		2세	3세	4세	5세	6세					
2015		3세	4세	5세	6세						
2014		4세	5세	6세	7세(초1)						
2013		5세	6세	7세(초1)							
2012		6세	7세(초1)	8세(초2)							

주: 1) 셀 안의 연령은 생활연령으로, 각 출생년도별 아동의 조사 당해연도 연령을 의미함. 연령이 기재되지 않고 사선 처리된 경우는 당해연도 조사 대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함.

2) 하늘색 음영(굵은글씨)은 조사 2025년 표본의 출생년도와 연령을 의미하며, 검은색 음영 표기 부분은 조사연도 기준 신생아 표본으로 신규 표본 가구를, 회색 음영 표기 부분은 초등학교가 조사된 차수와 조사된 연령 구간을 표시한 것임.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III-1-3〉을 수정 보완함.

2) 부스터표본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모집단을 알 수 있는 적합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전국단위의 가구조사로 가구소득이 파악 가능하고, 영유아 가구 여

부가 구분되는 자료인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개략적인 규모를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자료는 분기별로만 제공하고 있어, KICCE 소비실태조사 시기에 맞춰 전년도(2024년) 3분기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부모가구나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분위별 영유아 가구의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각 소득 분위에 속한 영유아 가구의 분포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본 분석은 분기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영유아 가구 표본의 수가 매우 작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소득뿐 아니라 재산 요건을 동시에 감안)에 맞춘 엄밀한 소득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1-2〉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자료: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추이(2024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인출일: 2025. 6. 11.).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영유아 가구는 3.5%로, 전체 가구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12.6%에 달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다. 영유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70% 가구는 6.0%, 중위소득의 70~75%는 3.6%, 중위소득의 75~80%가 5.1%, 중위소득의 80~100%가 12.9%였다. 즉, 영유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비중은 31.1%로, 전체 가구 기준 38.6%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결혼과 출산 자체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반면, 영유아 가구들은 중위소득의 100~120%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13.7%, 120~150% 구간에 속한 비중이 20.3%, 중위소득의 150%이상이 34.8%로, 전체 가구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즉, 영유아 가구들은 한국의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가구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가구에 는 소득이 없는 고령 1인 가구 혹은 청년 1인 가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라 하겠다.

〈표 II-1-3〉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별 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 2024년)

단위: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전체 가구	
	비중	관측수	비중	관측수
중위소득의 50% 미만	3.5	(13)	12.6	(1,104)
중위소득의 50 ~ 70%	6.0	(22)	9.7	(780)
중위소득의 70 ~ 75%	3.6	(15)	2.3	(186)
중위소득의 75 ~ 80%	5.1	(22)	3.1	(212)
중위소득의 80 ~ 100%	12.9	(49)	10.9	(818)
중위소득의 100 ~ 120%	13.7	(51)	11.4	(744)
중위소득의 120 ~ 150%	20.3	(73)	16.3	(1,066)
중위소득의 150% 이상	34.8	(131)	33.7	(2,229)
총계	100.0	(376)	100.0	(7,139)

주: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로, 구간의 구분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참고하여 세분하여 제시한 것임.
 2) 가계동향조사 소득 자료는 2024년 3분기(7~9월)자료로, 한부모가구나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하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식별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4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한편,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구간별 비중을 활용하여 소득구간별 영유아 가구 수를 추정해보면, 전체 영유아 가구 135만5,728가구 중 4만7,993가구가 중위소득의 50%미만 가구일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가'형 지원의 대상은 중위소득의 75%이하 가구이므로, 전체 영유아 가구의 13.1%인 17만8,685가구가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각 소득구간별 가구 수는 〈표 II-1-3〉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1-4〉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별 영유아 가구 수(가계동향조사 영유아 가구 비중 적용)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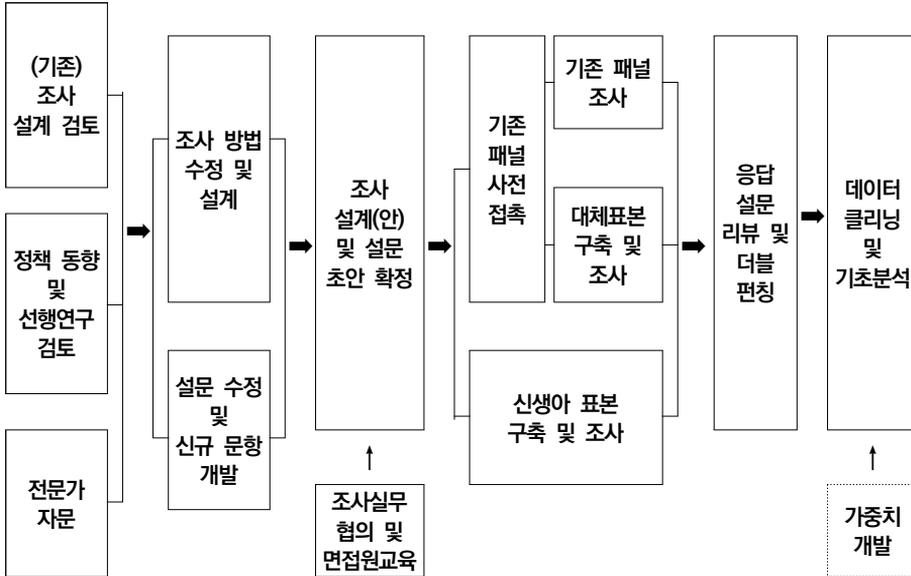
구분	비중	가구수
중위소득의 50% 미만	3.5	47,993
중위소득의 50 ~ 70%	6.0	81,479
중위소득의 70 ~ 75%	3.6	49,213
중위소득의 75 ~ 80%	5.1	69,413
중위소득의 80 ~ 100%	12.9	174,482
중위소득의 100 ~ 120%	13.7	186,277
중위소득의 120 ~ 150%	20.3	275,348
중위소득의 150% 이상	34.8	471,793
총계	100.0	1,355,728

주: 1) 구분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을 의미함.
 2) 구분별 가구 수는 〈표 II-1-2〉의 영유아 가구 비중을 KOSIS 영유아 가구에 적용하여 산출함.
 3) KOSIS에서 현재 제공하는 최신자료는 2023년으로 향후 2024년 자료가 제공되면 반영할 예정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3, 영유아수별 가구 및 연령별 영유아 - 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C1601&conn_path=l2(인출일: 2025. 6. 11).

나.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수행 절차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조사 수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그림 II-1-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 수행 절차



- 주: 1) 가중치 개발은 출생아 통계에 기반하여 작성되므로, 차년도에 진행함
 2) 조사 설계(안)은 조사 방식 및 조사 도구, 표본 추적 및 구축 원칙 등을 포함함.
 3) 보고서 작성은 조사 완료 이후 차년도에 수행하는 업무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분석 결과가 2025년 보고서에 수록됨.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I-1-1]을 수정 보완함.

다. 조사 도구 및 조사 시기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의 조사 도구는 2019년 조사까지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TAPI¹¹⁾)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 이후 조사 도구를 종이설문(PAPI¹²⁾)으로 전환하고, 조사 방식 또한 설문의 유치 혹은 전화 조사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최효미 외, 2023: 92~94).

11)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의 약어.

12) 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의 약어.

2025년 조사에서는 젊은 응답자들과 면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사도구를 응답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기존의 종이설문을 더욱 선호하는 경우에는 종이설문으로 진행하되, TAPI 조사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조사도구가 PAPI이든 TAPI이든 조사방법 자체는 예년과 동일하게 대면 면접 조사 방식을 기본으로 설문 유치 조사, 전화 조사 등을 병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설문 문항과 구조가 응답자가 자가 응답 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2025년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발굴 자체가 매우 어려운 대상으로, 기존의 조사구 조사 방식이 아닌 다양한 채널을 통한 모집 방식으로 응답자를 구성하였다. 즉, 조사업체 패널DB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의 이용자를 최대한 발굴하여 조사 참여를 적극 설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정책 수혜자 및 저소득 가구 응답자를 모집을 통해 확충하였다. 저소득 가구들의 경우 면접 조사 등을 위한 가정 방문을 극히 꺼려하는 경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희망할 경우 온라인 조사(CAWI¹³), CATI¹⁴) 등의 조사 방식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일정 부분 모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모집 및 조사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적정 표본 수 확보가 모드효과 보다 더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차수별 및 조사 종류에 따른 조사 도구와 조사 방법의 변화 내용은 <표 II-1-5>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의 약어.

14)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의 약어.

〈표 II-1-5〉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방법 변화

조사 연도	조사 종류	조사도구	대면조사여부	변화 사유
2018	본조사	TAPI	대면면접	-
	육아용품 구매	온라인	자가응답	-
2019	본조사 (초등 설문 포함)	TAPI	대면면접	-
2020	본조사 (초등 설문 포함)	PAPI	대면면접 원칙 (일부 설문 혼합조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면접의 어려움
2021				
2022	본조사			
2023	본조사	PAPI	대면면접 원칙 (일부 설문 혼합조사)	이전 조사방식에 적용한 응답자 고려
	부스터표본 (무자녀, 임산부)	온라인	자가응답	대면 면접의 어려움, 샘플 수 대비 연구 예산의 제약
2024	본조사	PAPI	대면면접 원칙 (일부 설문 혼합조사)	이전 조사 방식 유지 부스터표본의 응답 정확성 확보 (본조사와의 모드효과 통제)
	부스터표본 (농어촌)			
2025	본조사	PAPI, TAPI 병행	대면면접 원칙 (일부 설문 혼합조사)	-
	부스터표본 (저소득)	PAPI, TAPI, CAWI, CATI 등 응답자가 선호하는 방식 선택		저소득 가구 모집 어려움 및 대면 면접을 꺼려하는 특성 감안

자료: 1) 최호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pp.116~118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

2) 2025년 조사 설계 관련 연구진 회의 결과 반영.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기는 2023년 조사까지는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실시되었으나, 2024년 조사부터 조사 시기를 7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로 조정하였다. 2025년 조사 또한 7월~10월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2. 설문의 구성과 변화

가. 본조사 설문 개요

이 절에서는 1차년도(2018년)~8차년도(2025년)까지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설문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하였다. I기 1차년도(2018년) 이래로 조사내용

의 시계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설문 문항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시의성 주제 및 표본 변화 등에 따라 설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였다. II기(2023년~2027년)조사도 기존 I기 조사의 기본적인 설문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스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설문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2025년(8차년도) 조사도 가구 및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설문이나 가구의 소비실태를 파악하는 소득과 지출에 관한 기본적 문항은 유지하였다. 한편, 2023년(6차년도)에는 부스터표본으로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조사하여 기존 설문과는 완전히 다른 설문이 다수 필요해짐에 따라 별도의 설문을 개발하였으나, 2024년(7차년도)에는 농어촌 가구를 부스터표본으로 조사함에 따라 별도의 설문지를 만들지 않고 기존 본조사 설문에 일부 문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하였다. 단, 농어촌 가구와 기존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문항과 농어촌에 특화된 설문을 일부 추가하였다.

한편, 2025년(8차년도) 조사에서는 기존의 농어촌 관련 문항을 대거 삭제하고, 정책의 시의성 및 필요성이 떨어지는 설문도 상당 부분 정리하였다. 반대로 2025년 부스터표본인 저소득 가구를 식별하기 위한 문항과 저소득 가구 정책에 인지 및 수혜 등을 질문하는 설문을 일부 추가하였다.

그 외에는 조사 기간이 5~8월에서 7~10월로 미뤄짐에 따라 일부 문항의 기준 기간이 조정되었으며, 2024년(7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지자체 및 직장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문항 등은 1년 정도 유지하였다.

〈표 II-2-1〉 본조사 설문 의 개요(1~8차년도)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가구용 조사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	○	○	○	○	○	단시간근로이 유, 비정규직 여부 추가	이주민 여부 추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세부항목별 응답으로 분화, 저소득층 관련 육아지원 정책 수혜여부 추가, 부모 직장의 종사자 규모 추가
	가구의 경제활동 → '가구의 소득과 정책 수혜'로 변경(2022)	○	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 아동수당, 세제 지원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문항 추가, 아동수당 및 세제지원 문항 축소	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현황 추가, 코로나19 변동 문항 축소, 가구 지출 세목 조정, 주택관련 문항 추가	영아수당 관련 문항 추가, 첫만남 이용권 관련 문항 추가, 육아휴직급여 특례 수혜 경험 추가, 육아소비성향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증가 비목 추가, 주거비에 대한 주관적 부담감 추가	부모급여 관련 문항 추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선호도 추가, 소비문항에 주식 및 암호화폐와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지출 추가	지자체 및 직장의 출산지원금 관련 문항 추가,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일부 문항 축소 및 거주 지역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추가	첫만남 이용권 수금액 문항 삭제, 직장의 출산지원금 문항에서 지원 주기 삭제,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삭제, 가장 도움되는 정부지원금 문항 삭제, 기기/집기 하위 문항 삭제, 시기별 예상 양육비용 삭제, 자녀 경제적 지원 삭제, 주거 관련 문항 축소, 저소득 가구 정책 관련 문항 추가
	가구의 지출 및 양육 비용	○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	○	설문축소 및 통합 (초등포함으로 수정)	2차년도 기준 설문 축소	×	×	×	×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	×	×	×	×	×	×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	설문축소	×	×	×	×	×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 서비스	×	×	×	문항 추가	○	○	○	○
	개별돌봄서비스	×	○	○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삭제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삭제	○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	○	○	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에 대한 의견 추가	○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삭제	×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	×	×	○	○	코로나19 관련 돌봄공백 경험 추가	×	×	×
	육아 소비 성향	○	○	○	○	×	×	×	×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	일부 문항만 조사	○	○	×	일부 문항만 조사	일부 문항만 조사	일부 문항만 조사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육아용품 구매 경험 및 소비 행태	온라인 조사	×	×	×	×	×	×	×
	육아용품 물가 체감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	○	×	×	×	×
	경제 인식 및 물가 전망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	○	×	×	×	×
아동용 조사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이용시간 (기본보육시간) 관련 문항 및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서비스별 이용 시간 조사로 복원, 비대면 서비스 활용 추가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미이용 경험 추가,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행태 추가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미이용 경험 삭제	반일제 이상 기관과 집까지의 거리 문항 추가	어린이집 이용비용 세부항목을 4개에서 2개로 축소
	- 어린이집 이용								
	- 유치원 이용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 시간제 사교육 이용								
	- 기타 돌봄								
- 개별돌봄서비스	○	가구용으로 이관	×	×	×	×	×	×	
아동용 조사 : 초등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서비스별 이용 시간 조사로 복원, 비대면 서비스 활용 추가	×	×	×	×
	- 초등돌봄교실 이용								
	- 방과후학교 이용								
	- 시간제 사교육 이용								
	- 기타 돌봄								

주: 1)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전년도 설문 대비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2) 육아물가체감, 육아물가 전망은 이 연구가 아닌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에서 활용했던 문항임.

자료: 1)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pp.121~123, <표 III-2-1>을 참고하여 수정 및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 연구 설문지.

나. 본조사 설문 변화

1) 주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¹⁵⁾

본조사 설문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18년)에는 공유 경제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¹⁶⁾하였고, 2차년도(2019년)에는 아동수당과 세제지원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고, 초등1학년 아동에 대한 첫 추적 조사 진행에 맞춰 초등돌봄 관련 설문을 대거 추가¹⁷⁾하였으며, 3차년도(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련 문항과 새롭게 도입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문항을 추가¹⁸⁾하였다. 4차년도(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육아서비스 이용 관련 조사를 추가¹⁹⁾하였으며, 5차년도(2022년)에는 I기 조사의 마지막임을 고려하여 연도별 결과를 정리하고,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과 관련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²⁰⁾.

한편, II기 첫 해 조사인 2023년(6차년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 설문을 삭제하였으며, 추가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부모급여 관련 문항을 반영하여, 보육료 등 비용 지원 정책 설문을 크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부스터샷본 조사로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조사²¹⁾하였다. 7차년도(2024년)에는 조사 실시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각 설문의 조사 기준과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월별 정부지원금 수급 여부 문항 등의 응답 부담이 다소 증가한 시기였다. 2024년에는 농어촌 부스터를 조사함에 따라 부모의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여부, 거주 지역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문항과

15)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pp.124~1126, 내용을 포괄인용하여 작성하였음.

16) 최효미 외(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88~90,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17) 최효미 외(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 부록. 육아정책연구소. pp.12~19,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18) 최효미 외(2020).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pp.70~71,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19)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pp.90~91,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0)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pp.21~22,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1)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pp.98~101,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반일제 이상 기관과 집까지의 거리 문항 등이 설문에 추가²²⁾되었다.

8차년도(2025년) 조사인 올해 조사에서는 저소득 영유아 가구를 부스터표본으로 선정함에 따라 관련한 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문항이 크게 보강되었으며, 저소득 가구 정책에 대한 인지, 수혜 여부, 추가지원에 대한 찬반, 지원 대상 비목, 저소득 가구 양육 어려운 이유 등의 설문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반면,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가 모든 지역에서 전액 지원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비용 세부 항목을 축소하는 등 일부 문항을 조정하였다.

〈표 II-2-2〉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2019~2024년)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2차년도 (2019)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문항 추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문항 축소 통합	응답부담 경감
	개별돌봄서비스 가구용으로 이관	서비스 활용 양태를 고려하여, 응답자 편의 제고
	초등아동용 설문 개발 및 추가	표본 확대
3차년도 (2020)	긴급돌봄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및 양육비용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보육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 및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보육지원체계 제도 도입
	시간표 형태로 설문 전환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조합방식 확인
4차년도 (2021)	유연근무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가정내 돌봄서비스 및 부모지원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육아서비스 이용시간으로 설문 복원	3차년도 한시 설문으로, 응답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설문으로 복원
5차년도 (2022)	영아수당 관련 설문 추가(수혜여부,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의 활용 비목 및 자녀양육비용 경감에 도움 정도)	가정양육수당의 '영아수당'으로의 확대·개편
	첫만남이용권 관련 설문 추가(인지, 사용 비목 계획, 양육비 경감에 도움 정도)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지원으로서 '첫만남이용권' 도입
	육아휴직급여특례 수혜 경험 추가	육아휴직 이용 장려를 위한 특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실질적 활용 정도 파악
	여유소득 증가시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 비목 설문 추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양육비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 증가시의 효과 예측

22)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pp.124~1126,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의 가계 경제 부담과 대응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지출감소 및 증가 항목 파악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감 항목 추가	거주 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정도 파악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관련 문항 추가	육아서비스(개별,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파악
	가정 내 부모직접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자녀양육부담 경감 용도로 미디어 허용 여부 파악
	생애주기 중 정부 지원의 부족 시기 및 해당 시기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추가	생애주기별 정책 요구 파악
	돌봄공백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의 구체적 상황/ 일상적인 돌봄공백과 돌발적인 돌봄공백 상황에 대한 수요 구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관련 문항 추가	영유아기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新)육아서비스 이용 형태 파악
	육아소비 성향 및 육아 품목 물가 체감/경제인식 및 물가전망 관련 문항 삭제	연관 세부과제주의 종료. 육아소비 성향 관련 2개 문항은 유지.
초등학생용 설문 삭제	초등학생 표본 제외	
6차년도 (2023)	코로나19 관련 문항 삭제: 가구소득 및 양육비용 변화, 공적지원금 사용처 및 양육비용 부담경감,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돌봄공백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이 사라지고 서비스 이용도 정상화 되어 조사 필요성이 없어짐
	부모급여 수혜여부 및 사용처	'부모급여' 도입
	지출항목 중 금융상품 세부항목에 '주식 및 암호화폐' 추가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지출 파악
	지출항목에 '반려동물 상품 및 서비스' 추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비용 파악
	주거관련 세부항목 추가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내용 파악
	시기별 양육비용 예상(초등기, 중·고등기)	영유아 가구가 생각하는 시기별 예상되는 양육비용 파악
	삶의 만족도(사회경제적 위치 포함)	영유아 가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경제적 위치 파악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육아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파악
	부스터 조사1: 임신부 가구 조사	임산부 가구에 대한 특성 및 요구 파악
	부스터 조사2: 무자녀 가구 조사	무자녀 가구에 대한 특성 및 요구 파악
7차년도 (2024)	부모특성에 이주민 여부 추가	농어촌 부스터 표집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부 파악
	가구의 소득과 정책 수혜 조사 기간을 기존 '전년도 5월 ~ 올해 4월까지'를 '전년도 5월 ~ 올해 6월까지'로 확장	올해부터 조사 실시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응답 내용의 전체 기간을 복원하기 위해 확장
	지자체 및 직장의 출산지원금 수혜 경험 및 금액 문항 추가	지자체와 직장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현황 파악
	주거 및 지역 환경 문항에서 자가 소유 필요성 및 주거 관련 지원 정책 항목 삭제	전년도 부스터 조사와 비교를 위해 추가한 문항으로 부스터 조사가 변경됨에 따라 삭제
	거주 지역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문항 추가	농어촌 부스터 조사를 위한 현황 파악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삭제	다년간 조사한 항목으로 변화가 없어 계속 조사가 불필요함
	반일제 이상 기관과 집까지의 거리 문항 추가	농어촌 부스터 조사를 위한 현황 파악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8차년도 (2025)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세부항목별로 세분화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의 세부항목별 기준이 달라 세부적으로 응답을 받고자 함
	저소득층 관련 육아지원 정책 수혜여부 추가	저소득 가구 부스터 조사 대상 파악
	부모 직장의 종사자 규모 추가	직장 규모별 육아 시간 지원 정책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
	직장의 출산지원금 문항의 지원 주기 삭제	직장의 출산지원금 수혜자가 적고, 지원 주기 활용도가 낮음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삭제	시의성이 떨어짐
	시기별 예상되는 양육비용 문항 삭제	연도별 응답결과에 차이가 없고, 활용도가 낮음
	자녀 경제적 지원 기간 삭제	연도별 응답결과에 차이가 없고, 활용도가 낮음
	주거 관련(방 개수, 주택 면적, 거주지 출산 혹은 양육 관련 여부, 거주지 결정 요인, 이사 의향 및 이유, 양육하기 좋은 거주지 조건) 삭제	농어촌 부스터 조사를 위해 추가한 문항으로 부스터 조사가 변경됨에 따라 삭제
	저소득 가구 정책에 대한 인지, 수혜 여부, 추가지원에 대한 찬반, 지원 대상 비목, 저소득 가구 양육 어려운 이유	저소득 가구 부스터 조사를 위한 문항 추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연도별 응답결과에 차이가 없고, 활용도가 낮음
어린이집 이용비용 세부항목 축소	보육료지원에 따라 응답할 내용이 없어져 삭제함	

주: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의 세부과제 중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를 위한 조사를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 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에서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나, 세부과제 중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는 4차년도를 끝으로 종료됨.
 자료: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pp.124~126. <표 III-2-2>에 추가함.

2)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용 관련 문항 변화

8차년도(2025년)가구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용 관련 설문 문항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 특성에 재직 중인 직장의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의 제약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고용형태 및 사업체 규모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8차년도 부스터표본 조사 진행을 위해 저소득 영유아 가구를 식별하기 위한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수혜 여부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식별 문항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각각 세분하여 수혜 여부를 질문하였다.

반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의 제도가 도입되어 안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책 시의성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지원금을 어떤 비목에 사용하였는지 등의 문항을

삭제하여 경량화 하였다. 또, 지자체 및 직장 출산지원금 지원 주기는 활용성이 떨어져 수혜경험과 총 수급액만 남기고 설문을 축소하였으며, 영유아 가구 대상 정부 지원금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도 효용성이 낮아 문항을 삭제하였다.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 중 기기/집기의 세부 항목인 PC/노트북/태블릿 PC는 코로나19시기 추가된 문항이었으나, 효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세부비목을 삭제하였다. 7차년도(2024년)에 농어촌 부스터표본 조사를 위해 자세하게 확인하였던 주거 관련 문항의 경우에도 8차년도(2025년)에는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방의 개수, 주택 면적, 거주지 출산 혹은 양육 관련 여부, 거주지 결정 요인, 이사 의향 및 이유, 양육하기 좋은 주거지 조건 등의 설문을 대거 삭제하였다. 또한 시기 별 양육비용 예상(초등기, 중·고등기) 문항도 6차년도(2023년) 무자녀 가구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 설문인 점을 감안하여 8차년도(2025년)에는 삭제하였다.

〈표 II-2-3〉 가구용 설문 비교(1~7차년도):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응답자 성별, 자녀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별, 가구원 구성	○	○	○	○	○	○	○	○
부모 특성: 생년, 학력, 취업여부, 직업, 근로형태, 노동시간, 출퇴근 시간	○	노동시간 관련 설문은 세분	○	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근로시간단축 시간 추가	단시간근로이 유, 비정규직 여부 추가	이주민 여부 추가	부모 직장의 종사자 규모 추가
결혼 시기,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	○	결혼 시기는 신규 가구만 응답	○	○	○	○	○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세부항목별 응답으로 분할, 저소득층 관련 육아지원 정책 수혜여부 추가
[미취업모] 취업 의향	×	×	문항 신설	×	×	×	×	×
가구소득(지난 3개월 월평균 세후):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 코로나19 긴급상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으로 수정	○	○	○	○	○	○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1: 누리과정, 보육료, 양육수당(영아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장려금, 기타	지난 1개월 1회 수령	지난 1년 동안의 수급 현황 모두 조사	문항 통합 (응답표 형태 수정)	○	○	부모급여 추가	○	○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2: 아동수당	×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동, 부모 노동시간 변동 등	×	×	문항 신설	×	×	×	×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아동수당 사용 출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	○	○	○	×	×	×
코로나19 공적지원금 활용처	×	×	×	○	○	×	×	×
세제 지원 인지 및 수급현황	×	○	○	문항간소화	○	○	○	○
아동수당 지원제도 정책 변화 인지 및 경로	×	○	×	×	×	×	×	×
아동수당정책에 대한 선호 및 우선순위	×	○	×	×	×	×	×	×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	×	○	×	×	×	×	×	×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사용 비목,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	×	×	○	×	×	×
첫만남이용권 사용계획 지출비목, 양 육비용 경감 도움 정도에 대한 기대	×	×	×	×	○	지출비목만 조사	지출비목만 조사	×
지자체 및 직장 출산지원금 받은 경 험 및 금액	×	×	×	×	×	×	○	지원 주기 삭제
부모급여 사용 비목	×	×	×	×	×	○	○	×
현금성 지원금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아동수당, 가정양육수 당,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 용권)	×	×	×	×	△(가정양육 수당,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개별 질의)	○(통합)	○(통합)	○(통합)
영유아 가구 대상 정부 지원금 중 가 장 도움이 되는 정책	×	×	×	×	×	○	○	×
세법 개정(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	○	×	×	×	×	×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정책에 대한 의견								
자녀 장려금 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	×	×	×	×	×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	○	보육지원 체계개편	×	×	×	×	×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 비목 13개, 세부 항목 11개	○	○	○	보건의료 예시보강, 기기/집기 세목 추가	○	금융상품 세부항목에 주식 및 암호화폐 추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항목 추가	○ (비목 14개, 14개)	기기/집기 하위 세부 항목 삭제 (비목 14개, 세부 항목 13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변동, 양육비용 변동	×	×	문항 신설	×	코로나19로 생활비 지출이 감소·증가한 비목	×	×	×
주거 관련 문항: 현재 주거 현황, 주택 구입의 필요성, 주거관련 양육환경, 주거비 부담	○	문항 간소화	문항 간소화	주택평수 추가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 정도 추가	거주 주택 가격 추가, 육아가구 자가소유 필요성 추가, 1차년도	주거관련 지원 정책 인지, 이용 경험 삭제, 주거 정책 출산 영향 등	주택 방의 개수, 주택 면적, 거주지 출산 혹은 양육 관련 여부, 거주지 결정 요인, 이사 의향 및 이유,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주거 문항 추가, 주거관련 지원 정책 인지, 이용 경험 추가, 주거 정책 출산 영향 추가 등	삭제, 거주 지역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과 농어촌 거주 장단점 추가	양육하기 좋은 거주지 조건 삭제
양육 비용 충분성 및 지출 우선 순위, 비용 부담	○	○	○	○	생활비 감축 우선순위 추가	여유소득 우선 지출 삭제, 추가소득 발생시 우선 지출 삭제	○	○
시기별 양육비용 예상(초등기, 중·고등기)	×	×	×	×	×	○	○	×
자녀 출산 전후 가계 소비 변화	○	×	×	×	×	×	×	×
사회경제적 위치	○	○	○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지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pp.127~129, <표 III-2-3>에 추가 및 수정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 연구 설문지.

3)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변화

8차년도(2025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변화에 대한 설문은 8차년도(2025년) 부스터표본 조사를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 정책에 대한 인지, 수혜 여부, 추가지원에 대한 찬성/반대, 지원 대상 비목, 저소득 가구가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추가하였다. 해당 설문은 부스터표본 조사로 인해 추가된 문항이기는 하나 본조사 설문 대상자도 모두 응답하는 문항이다.

반면, 2차년도(2019년) 이후로 계속 조사해 온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문항은 응답 결과가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변화가 거의 없는 문항으로, ‘자녀 양육 시 가장 부족한 정부 지원’ 문항만 남기고, 하부 문항 즉 부족하다고 생각한 육아지원 분야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양육 지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문항도 삭제하였다.

〈표 II-2-4〉 가구용 설문 비교(1~8차년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정책 인지, 선호	×	×	문항 신설	×	×	×	×	×
가정 내 부모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 서비스, 자녀양육 부담, 자녀의 전자기기 이용 시간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허용 여부	×	×	×	문항 신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허용 여부	○	○	○
자녀 연령별 이용희망 서비스, 자녀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	○	×	×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	○	○	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에 대한 의견 추가	○	○	자녀 양육 시 가장 부족한 정부 지원만 남김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 돌봄 방법	○	○	○	×	×	×	×	×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	×	×	○	○	긴급한 돌봄공백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경험 추가	×	×	×
육아 정책 변화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의사 변화	○	○	×	×	×	×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용 설문	○	○	○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삭제	○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보건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이용, 만족도 / 교육·보육관련 지원 정책 이용여부, 만족도, 미이용 사유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 이용 /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인지, 이용, 만족도	○	×	×	×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부모교육 필요성,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추가	×	×
초등 돌봄 국가 책임(부모/국가)	×	○	×	×	×	×	×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	×	×	×	×	×	○	○	×
양육 지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기	×	○	○	○	○	○	○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 수급여부 및 정책 만족도	○	○	○	○	○	○	×	×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²⁾ - 이용 경험, 만족도, 도움정도, 이용하지 못한 이유, 개선 필요 정책 및 개선 방향 등	×	×	×	×	△ (이용경험만 질문)	○	○	○
저소득 가구 정책에 대한 인지, 수혜 여부, 추가지원에 대한 찬반, 지원 대상 비목, 저소득 가구 양육 어려운 이유	×	×	×	×	×	×	×	○

주: 1)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지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2) 육아 시간 지원 정책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포함),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직장에서 별도 제공하는 제도 및 유연근무 제도를 포함함.

자료: 1)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pp.131~132, <표 III-2-4>에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본 연구 설문지.

4) 아동용 설문 변화

아동용 설문은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그대로 유지하되,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부모 부담 보육료, 즉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모든 지역에서 실시²³⁾됨에 따라 실제 비용 지출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을 4개(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 그 밖의 비용,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특별활동)에서 2개(보육료 이외 비용, 어린이집 특별활동)로 축소하였다.

23) 각 시도별 필요경비 지원(2025).

〈표 II-2-5〉 아동용 설문 비교(1~8차년도): 영유아

세부 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주로 돌보는 사람		○	○	×	×	×	×	×	×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이유		×	○	×	×	×	×	×	×
자녀의 기관 이동 경험		×	○	×	×	×	×	×	×
기관 이동 경로		×	○	×	×	×	×	×	×
평균적인 한 주 일과(시간대별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		×	×	○	×	×	×	×	×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	×	○	×	×	×	×	×
어린이집 이용자	어린이집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	○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거리 추가	이용비용 세부항목을 4개에서 2개로 축소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	×	×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	×	×
유치원 이용자	유치원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 시간, 만족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관련 지출비용,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	○	집에서 유치원까지 거리 추가	○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	×	×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유치원을 등 원하지 못한 경험	×	×	×	×	○	×	×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	○	집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까지 거리 추가	○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	×	×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제 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	×	×

세부 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문화 센터	이용 기관, 이용 종류, 이용 비용	○	○	○	회수, 시간 문항 추가	○	○	○	○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	×	×	○	○	×	×	×
시간제 일시 보육	이용여부, 시간제 보육 장소, 이용 빈도, 1회당 평균 이용 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	○	이용 사유 삭제	○	○	○	○	○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돌봄 장소, 개별돌봄 인력 근무형태, 육아도우미 국적,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가구용 설문으로 이관	×	×	×	×	×	×
학원	이용여부, 종류, 개수, 월 이용비용, 비대면 수업 여부, 만족도,	○	○	○	비대면 수업 관련 문항 추가	○	○	○	○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	×	×	○	○	×	×	×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 사교육 개수,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	○	서비스 종류별로 세분	○	○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추가	○	○
	비대면 서비스 이용	×	×	×	○	○	×	×	×
기타 육아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	○	키즈카페 만 질문	○	비정기체 협활동 관련 설문 추가	○	○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지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pp.134~135, <표 III-2-5>에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 연구 설문지.

I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응답자 특성

- 01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 표본추적률
- 0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조사 응답자 특성
- 0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부스터표본 조사

Ⅲ.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응답자 특성²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조사는 2025년 10월 말에 실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은 2025년 신생아 및 영유아 수가 확정되는 2026년 1월에 완료된다. 이러한 데이터 산출 과정으로 인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자료 분석은 조사 차년도인 2026년에 실시된다. 다만, 이 장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실사 완료 보고에 해당하는 표본 추적 및 기초적인 응답자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한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 결과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1.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 표본추적률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본조사 응답 표본의 수는 1,830가구로, 표본 추적에 성공한 패널 표본이 1,404가구, 대체표본이 172가구, 신생아 표본이 254가구이다. 전년도 조사 대상 가구 중 추적 대상 표본 1,576가구였는데, 이 중 1,405가구가 조사되어, 표본추적률은 89.1%였다.

2025년 본조사 응답표본 수는 2018년 1,648가구에서 182가구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일반적인 패널조사와는 달리 표본 추적에 실패한 가구에 대해 동일 혹은 유사 특성을 가진 영유아 가구로 매해 대체표본을 구축하고 있는데다, 신생아 표본의 수를 254가구로 고정 할당하여 표집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막내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 표본에서 제외되는데, 추적 대상 가구 중 후속 출산으로 인해 막내 자녀 연령이 변동하여 여전히 표본으로 남아 있게 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추적률은 조사 설계 방식 및 영유아 가구 특성을

24) 조사 시점 및 가중치 산출 일정으로 인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 분석은 2026년 과제에서 수행될 예정으로, 여기에서는 2025년 조사 완료 현황 및 기초적인 응답자 특성 정도만을 보고함.

고려하여 2018년(1차년도) 조사 원표본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닌 전년도 자료에 대한 추적 성공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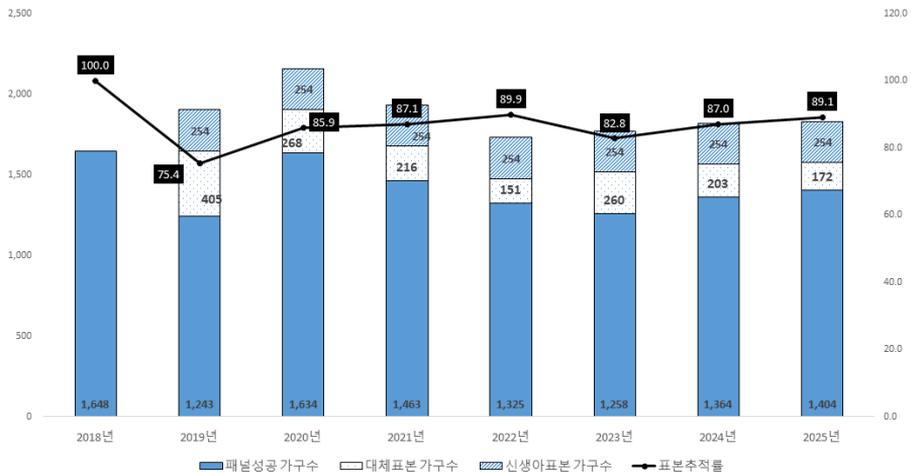
〈표 III-1-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5년) 표본 가구수 및 추적률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표본 수	추적대상 표본 수	당해연도 조사성공 가구 표본 특성			표본 추적률	
			패널표본	대체표본	신생아 표본		
I 기	2018년	1,648					
	2019년	1,902	1,648	1,243	405	254	75.4
	2020년	2,156	1,902	1,634	268	254	85.9
	2021년	1,933	1,679	1,463	216	254	87.1
	2022년	1,730	1,476	1,325	151	254	89.8
II 기	2023년	1,772	1,518	1,258	260	254	82.8
	2024년	1,821	1,567	1,364	203	254	87.0
	2025년	1,830	1,576	1,404	172	254	89.1

- 주: 1) 추적 대상 표본이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2018년 영유아(생활연령 기준 6세)이며, 2019년은 7세(초1), 2020년 8세(초2), 2021년 7세(초1), 2022년 이후로는 영유아(만6세)임
 2) 표본추적률은(당해연도 패널(추적성공) 표본/당해연도 추적 대상 표본) *100으로 산출됨.
 자료: 1) 최호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표 III-3-1>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8차년도) 원자료.

〈그림 III-1-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5년) 표본 가구 수 및 추적률



주: 표주 및 자료 출처는 상동.

한편, 조사방법별 응답 표본을 살펴보면, 대면면접조사가 71.3%(1,305가구)로 대부분이며, 방문한 후 설문지 일부를 남겨두고 온 후 결과를 수거하는 방식인 방문+유치조사가 20.2%(369가구)였다.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방문+유치 조사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응답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 설문지 일부가 유치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사한 이유로 대면 면담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 저소득 가구,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방문+유치조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1-2〉 조사방법별 응답자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단위: 가구(%)

구분		대면면접 조사	전화	유치	방문 +전화	방문 +유치	계
전체		1,305 (71.3)	7 (0.4)	75 (4.1)	74 (4.0)	369 (20.2)	1,830 (100.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39 (67.8)	5 (0.5)	35 (3.7)	49 (5.2)	214 (22.7)	942 (100.0)
	외벌이	666 (75.0)	2 (0.2)	40 (4.5)	25 (2.8)	155 (17.5)	888 (100.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 (52.9)	0 (0.0)	5 (9.8)	1 (2.0)	18 (35.3)	51 (100.0)
	300~399만원 이하	111 (72.5)	1 (0.7)	4 (2.6)	5 (3.3)	32 (20.9)	153 (100.0)
	400~499만원 이하	280 (72.7)	0 (0.0)	15 (3.9)	13 (3.4)	77 (20.0)	385 (100.0)
	500~599만원 이하	298 (72.9)	2 (0.5)	14 (3.4)	16 (3.9)	79 (19.3)	409 (100.0)
	600만원 이상	589 (70.8)	4 (0.5)	37 (4.4)	39 (4.7)	163 (19.6)	832 (100.0)
총 자녀수	1명	531 (76.0)	3 (0.4)	22 (3.1)	27 (3.9)	116 (16.6)	699 (100.0)
	2명	620 (70.3)	1 (0.1)	38 (4.3)	38 (4.3)	185 (21.0)	882 (100.0)
	3명 이상	154 (61.8)	3 (1.2)	15 (6.0)	9 (3.6)	68 (27.3)	249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506 (68.5)	1 (0.1)	44 (6.0)	38 (5.1)	150 (20.3)	739 (100.0)
	중소도시	637 (74.9)	3 (0.4)	29 (3.4)	31 (3.6)	150 (17.6)	850 (100.0)
	읍면지역	162 (67.2)	3 (1.2)	2 (0.8)	5 (2.1)	69 (28.6)	241 (10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8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조사 응답자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의 본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830 가구 중 막내자녀 연령 기준 0세가 167가구(9.1%), 1세 16.1%, 2세 16.3% 등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 표본 추적에 성공한 패널 표본은 6세의 경우 전체 263가구 중 245가구로 표본대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세의 경우에는 2025년 신생아 표본 구축 127가구를 포함하여 294가구가 조사되었다.

〈표 III-2-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본조사 가구 표본: 막내자녀 연령별

단위: 가구(%)

구분	전체 표본 수	패널표본	대체표본	신생아 표본
전체	1,830 (100.0)	1,404 (100.0)	172 (100.0)	254 (100.0)
2019년생 (6세)	263 (14.4)	245 (17.5)	18 (10.5)	0 (0.0)
2020년생 (5세)	257 (14.0)	234 (16.7)	23 (13.4)	0 (0.0)
2021년생 (4세)	268 (14.6)	240 (17.1)	28 (16.3)	0 (0.0)
2022년생 (3세)	282 (15.4)	248 (17.7)	34 (19.8)	0 (0.0)
2023년생 (2세)	299 (16.3)	243 (17.3)	55 (32.0)	0 (0.0)
2024년생 (1세)	294 (16.1)	154 (11.0)	14 (8.1)	127 (50.0)
2025년생 (0세)	167 (9.1)	40 (2.8)	0 (0.0)	127 (50.0)

주: 1) 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의미함.

2) 패널표본은 전년도(7차)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추적 조사에 성공한 경우이며, 대체표본은 추적 조사에 실패한 가구를 대신하여 대체된 표본, 신규표본은 조사차수 기준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에 출생한 신생한 표본을 의미함.

자료: 1)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표 III-3-2〉.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8차년도) 원자료.

한편, 아동용 설문에 응답한 아동의 수는 2025년 2,452명으로 2024년 2,434명에서 1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설문 응답자 수는 2025년 보육연령 기준 5세인 2019년생이 444명(18.1%)로 가장 많고, 연령이 어릴수록 응답자 수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가 가구 내 영유아 모든 자녀를 아동 설문의 응답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순위 자녀로 인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표 III-2-2〉 소비실태조사(2018~2025년) 영유아 출생연도별 표본(아동용 설문 조사 표본 기준)

단위: %(명)

출생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2025년생	-	-	-	-	-	-	-	7.0 (172)
2024년생	-	-	-	-	-	-	6.6 (161)	12.4 (304)
2023년생	-	-	-	-	-	6.4 (156)	13.3 (323)	13.7 (335)
2022년생	-	-	-	-	6.5 (156)	13.1 (317)	14.0 (341)	15.3 (374)
2021년생	-	-	-	5.6 (160)	13.4 (321)	14.2 (343)	15.0 (365)	16.3 (399)
2020년생	-	-	4.8 (158)	11.2 (316)	14.0 (335)	15.7 (381)	16.4 (400)	17.3 (424)
2019년생	-	5.7 (158)	9.8 (321)	12.5 (353)	16.5 (396)	17.0 (411)	17.4 (424)	18.1 (444)
2018년생	5.6 (127)	10.7 (297)	10.1 (331)	13.0 (367)	15.8 (379)	16.5 (400)	17.3 (420)	-
2017년생	11.7 (267)	10.7 (296)	10.2 (333)	12.8 (363)	16.4 (392)	17.1 (414)	-	-
2016년생	13.0 (295)	12.1 (336)	11.6 (379)	14.3 (404)	17.4 (416)	-	-	-
2015년생	15.6 (356)	14.8 (410)	12.9 (424)	15.5 (438)	-	-	-	-
2014년생	16.2 (370)	14.6 (406)	12.9 (422)	15.2 (431)	-	-	-	-
2013년생	17.7 (403)	15.2 (421)	13.5 (441)	-	-	-	-	-
2012년생	20.2 (459)	16.3 (452)	14.3 (469)	-	-	-	-	-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2,832)	100.0 (2,395)	100.0 (2,422)	100.0 (2,434)	100.0 (2,452)

주: 1)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의 아동용 설문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2) 2019(2차년도)는 초등1학년, 2020년(3차년도)는 초등2학년, 2021년(4차년도)는 초등1학년까지 아동용 설문조사를 실시함.

자료: 1) 최효미 외(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표 III-3-3〉.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8차년도) 원자료.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부스터표본 조사

한편, 2025년에는 부스터표본으로 저소득 영유아 가구 150가구를 추가 모집하여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53가구를 조사 완료하였다. 부스터표본의 가구소득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299만원 이하 가구가 4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399만원 34.0%, 400~499만원 17.0%였으며, 500~599만원인 경우도 9가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에서 저소득 가구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 수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가구소득이 500~599만원임에도 저소득 가구 정책 수혜를 받는 경우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을 받는 경우 6가구, 영양플러스 3가구, 아이돌봄서비스(가 형) 4가구, 지자체 저소득 가구 육아 지원 1가구, 국세청 자녀장려금 2가구였다. 한편, 지원 받은 저소득 정책별로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은 가구가 90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 지원받은 정책은 중복수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정책을 지원 받는 가구가 77가구(50.3%)로 나타났다.

한편, 부스터표본의 평균 가구소득은 317만2천원으로 나타났고, 저소득 지원 정책별로는 지자체 저소득 가구 육아 지원이 414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359만6천원, 아이돌봄서비스(가 형) 355만5천원, 영양플러스 326만원, 국세청 자녀장려금 310만원, 디딤씨앗통장 277만8천원, 교육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63만5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정책은 없으나 소득이 낮아 포함된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277만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2-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부스터표본(저소득 가구) 특성

단위: 가구(%), 만원(가구)

구분	가구소득					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계	
전체	66(43.1)	52(34.0)	26(17.0)	9(5.9)	153(100.0)	317.2(153)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13(31.0)	13(31.0)	10(23.8)	6(14.3)	42(100.0)	359.6(42)
영양플러스	11(42.3)	8(30.8)	4(15.4)	3(11.5)	26(100.0)	326.0(26)
아이돌봄서비스(가 형)	11(26.8)	15(36.6)	11(26.8)	4(9.8)	41(100.0)	355.5(41)

I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응답자 특성

구분	가구소득					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계	
디딤씨앗통장	19(51.4)	14(37.8)	4(10.8)	0(0.0)	37(100.0)	277.8(37)
지자체 저소득 가구 육아 지원	0(0.0)	2(33.3)	3(50.0)	1(16.7)	6(100.0)	414.7(6)
교육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19(59.4)	11(34.4)	2(6.3)	0(0.0)	32(100.0)	263.5(32)
국세청 자녀장려금	39(43.3)	32(35.6)	17(18.9)	2(2.2)	90(100.0)	310.0(90)
해당 없음	5(62.5)	2(25.0)	1(12.5)	0(0.0)	8(100.0)	277.5(8)

주: 정책 지원은 중복 수혜가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8차년도) 원자료.





참고문헌

- 교육부(2025).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4~5세 추가지원 포함).
- 보건복지부(2025a).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
- 보건복지부(2025b).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5).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강은진·조미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조미라·김태우·장경희·김병철(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자연·이재희·김태우(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조미라·우석진·김태우(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인터넷자료]

-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추이(2024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_Detail.do?idx_cd=2762(인출일: 2025. 6. 11.).
-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추이(2025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_Detail.do?idx_cd=2762(인출일: 2025. 6. 2).

-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https://blog.naver.com/moeblog/223813042371>(인출일: 2025. 6. 2).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인출일: 2025. 9. 22.).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3000000&tm3Idx=1003030000(인출일: 2025. 9. 22.).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인출일: 2025. 6. 2).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20300>(인출일: 2025. 6. 2).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welfareInfoId=WLF00001148>(인출일: 2025. 9. 22.).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welfareInfoId=WLF00000092>(인출일: 2025. 9. 17.).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소개.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인출일: 2025. 9. 20.).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인출일: 2025. 6. 2).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인출일: 2025. 6. 2).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인출일: 2025. 6. 2).
- 정부2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인출일: 2025. 6. 2).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533&ccfNo=3&cciNo=3&cnpClsNo=1>(인출일: 2025. 6. 2.)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3, 영유아수별 가구 및 연령별 영유아 - 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C1601&conn_path=I2(인출일: 2025. 6. 11).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9호, 2025. 11. 11.,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6호, 2024. 1. 2.,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모자보건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9호, 2025. 4. 1.,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에너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유아교육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 개정]

[통계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4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원자료



A Study of Childrearing Costs an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KICCE Spending Survey 2025)

Hyo Mi Choi, Eunyong Kim, Eun Jung Park, Tae Woo Kim, Gil Sook Kim

‘KICCE Spending Survey’ is a statistical survey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focusing on their financial status and spending, as well as use of childcare services. It has been conducted annually from 2018 to 2025, during which a total of 8 annual waves worth of data has been compiled.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5』 represents the 3rd wave of Phase II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which is an on going research project that is scheduled to run continuously over a period of 5 years until 2027. Reports for the 2025 study were prepared separately into the ‘survey’ and ‘analysis’ parts to improve readability and completeness. As the present report belongs to the former part, it concerns mainly with survey and fieldwork-related matters.

In addition to the main survey stably administered to the continuously-tracked sample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KICCE Spending Survey_2025’ also surveyed a booster sample of low-income households. Selection into the main survey sample is based on the age of a household’s youngest child. The main survey sample consists of panel samples that were tracked from previous-wave responses, the substitute sample, and the newborns sample. Booster samples are supplemental samples that are drawn up only at certain points in time for cross-sectional surveying. In 2025, we surveyed a booster sample of 150 low-income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1. Overview of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4

-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4' consists of the main survey administered to a total of 1,822 households and a supplemental study of a booster sample of 160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residing in rural and agricultural areas.
 - Compared to the 2018 study, the main survey sample grew by 174 households.
- The total number of young children who responded to the main survey of the 2024 study was 2,450.

2. Key Findings from the KICCE Spending Survey(2018~2023) Data

1) Childcare Costs

- The per-child monthly average child-rearing costs (nominal term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 2023 was 1,354,000 KRW, a sharp increase from 1,273,000 KRW in 2022.
 - During 2018~2022, the per-child average child-rearing costs (nominal terms) started at 659,000 KRW in the 1st wave (2018), decreasing to 610,000 KRW in the 3rd wave (2020), but then rose sharply to 807,000 KRW in the 6th wave (2023).

1. Overview of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5

- The main survey sample of 'KICCE Spending Survey_2025' consisted of a total of 1,821 households, including 1,364 panel households that were successfully contacted, 203 substitute sample households, and 254 households with newborns.
 - Compared to the 2018 study, the main survey sample grew by 182 households.
- The total number of young children who responded to the main survey of the 2025 study was 2,434. Selection Criteria for the Booster Sample (low-income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For selection into the booster sample of low-income households, we looked at households whose average monthly income from 2025 January~June fell short of 50% of the median income. Other

factors were considered in a comprehensive manner to determine selection.

- Selection into the booster sample (low-income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prioritized enrollment or receipt of policies including ① support for diapers/formula for low-income households by the Mo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the ‘Nutrition Plus’ program by the MoHW, ③ eligibility for ‘A’ type childcare support program provided by the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④ the ‘Didim Seed Account’ program by the MoHW, ⑤ support programs for low-income childcare support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⑥ support for educational fees provided by the MoE (Ministry of Education), ⑦ the Child Tax Credit from the NTS (National Tax Service).

2. Composition of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5 Questionnaire and Changes

- Basic questions regarding household / parent / child characteristics, household spending practices, and household income were retained.
- Most of the previous questions regarding rural households were removed, as were questions of decreased policy relevance and timeliness. Questions to identify low-income households for the booster sample, as well as questions regarding awareness and take-up of policies for low-income households were newly added.
- To preserve continuity with previous waves, questions for children were retained as they were. Meanwhile, in consideration of parent-borne costs regarding the usage of childcare centers, the sub-items were simplified from 4 to 2 entries (costs other than childcare, special activities at childcare centers).

Keyword: KICCE Spending Survey, Survey Design, Composition and Changes to Questionnaire, Survey Outcomes, Respondent Characteristics

부록 1. 2025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2025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5년 일반과제인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2025)」의 일환으로,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과 육아서비스 이용, 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 육아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1기 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11기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호, 제②호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세부 주소					
모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중 ⑤ 미취업 ⑥ 모 없음				
조사원 이름		조사원 ID		조사표 작성일	2025년 월 일
조사 방법	① 방문 ② 전화 ③ 유치 ④ 방문+전화 ⑤ 방문+유치 ⑥ 기타				

문04-1. 영유아 자녀와 응답자 본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1. 자녀의 부 | 6. 자녀의 조모 |
| 2. 자녀의 모 | 7. 자녀의 외조부 |
| 3. 자녀 부의 형제자매 | 8. 자녀의 외조모 |
| 4. 자녀 모의 형제자매 | 9. 그 외 친인척 () |
| 5. 자녀의 조부 | |

문05. 귀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입니까?

구분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수급 여부	1. 예 2. 아니요			

문06. 다음의 육아지원 정책 중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2.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중위소득의 80%)
3.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중위소득의 75% 이하) 이용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5. 지자체의 저소득 가구 육아 지원 (예: 산후조리비 지원, 육아보조 수당 등)
→ 지원사업명()
6. 교육부의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7. 국세청의 자녀장려금(세제 지원)
8. 해당없음 → 문06-1

〈표〉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 현황: 중앙부처 지원 사업

제도명	제도 설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주무 부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영아(0~24개월)를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보건복지부

제도명	제도 설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주무 부처
			[조제분류]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영양플러스	영양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임신부와 영아아의 건강한 영양상태 유지와 개선을 돕기 위한 국가 영양 지원 프로그램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 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상담 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6세까지)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보건 복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형 지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형 지원은 중위소득의 75% 이하)	시간제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의 이용 비용 지원: 가구특성 및 서비스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이용금액의 90~58%로 상이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등) 가형 지원은 중위소득의 75% 이하	여성 가족부
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제도로 아동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 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건 복지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월 최대 20만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의 3~5세 유아	교육부
자녀장려금 (세제 지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제도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혹은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국세청

문06-1. 귀댁의 올해(2025.1.1.~2025.6.30.)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세후소득)은 얼마입니까?
()만원

→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 250만원 초과, 4명인 경우 300만원 초과, 5명 이상인 경우 350만원 초과는 '설문 종료'

문06-2.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함에도, 앞서 문6에 제시된 정책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2. 제도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지원 대상인 줄 몰라서
3. 해당 지원서비스의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 소득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일시적 소득 하락 등) → '설문 종료'
5. 소득 외의 자격 조건(예: 재산요건, 부양가족 여부 등)을 충족하지 못해서
6. 지원금이 있어도 실제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7. 기타 ()

문07~08.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07. 모(어머니)	문08. 부(아버지)
① 출생연도	()년생	()년생
② 최종학력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③ 취업 여부	1. 취업 → ④ 직업군으로 2. 휴직 중 → ④ 직업군으로 3. 학업 중 → ⑨ 이주민 여부로 4. 구직 중 → ⑨ 이주민 여부로 5. 미취업 → ⑨ 이주민 여부로	1. 취업 → ④ 직업군으로 2. 휴직 중 → ④ 직업군으로 3. 학업 중 → ⑨ 이주민 여부로 4. 구직 중 → ⑨ 이주민 여부로 5. 미취업 → ⑨ 이주민 여부로
④ 직업군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구분	문07. 모(어머니)	문08. 부(아버지)
⑤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⑥ 노동시간*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⑥-1. 단시간 근로이유 *주당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만 응답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2. 건강 3. 육아 4. 가사 5. 통학 6. 본인이 원해서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8. 기타()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2. 건강 3. 육아 4. 가사 5. 통학 6. 본인이 원해서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8. 기타()
⑦ 비정규 여부 (⑤ 근로 형태 중 1. 임금근로자만 응답)	1. 정규직 2. 비정규직	1. 정규직 2. 비정규직
⑧ 사업체 규모 및 상시 근로자 수 (⑥ 근로 형태 중 1. 임금근로자만 응답)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중기업 → 상시근로자 수: ()명 4. 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명 ※ 사업체 전체 기준(근로계약한 사장 기준) 응답 (예: ○○은행 노현점 근무 시, ○○ 은행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응답. 단, ○○치킨 노현점과 근로계약 시 해당 지점 상시 근로자 수만 응답)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중기업 → 상시근로자 수: ()명 4. 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명
⑨ 이주민 여부 (전체 응답)	1. 예 (예시: 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2. 아니요	1. 예 (예시: 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2. 아니요

-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노동시간에는 가사 노동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만을 응답하며, 야근, 휴일 노동 등 초과 노동시간도 합산하여 응답합니다.
- ※ 대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이상 1조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중기업은 연 매출 100억~1,500억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 10인 이상~300인 미만(업종별 상이),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업종별 상이) 기준입니다.



1. 가구의 소득과 정책 수혜

문09. 귀댁의 자녀는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각 아동별로 **현재** 아동수당 수혜 여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신청 후 누구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전체 자녀에 대해 응답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문10.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4.7.1.~2025.6.30.)** 받으신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지원 확인을 위해 이용하신 기관과 지원 금액을 여쭙어보겠습니다.

-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용하신 기관 유형에 표시해주세요.
- ※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아이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나 (야간)24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연령별 보육료 지원이 아닌 해당 보육료 지원에 표시해주세요.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한 군데만 표시해주세요.)
- ※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는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최대 월 24만원까지), 장애아동은 시간당 5,000원(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받으신 경우 시간당 단가에 맞춘 지원 금액을 적어주세요.
- ※ 유치원 지원 금액은 아동의 **방과후수업 신청 과목** 수에 따라 **방과후 과정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적어주시고, 저소득층 대상 기타 실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을 합산하여 적어주세요.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원받으신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 금액은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23년 이후 출생아)			
연령 (0~23개월)	부모급여 종류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만 0세	(현금) 100만원	(바우처) 54만원+(현금) 46만원	(바우처) 전액
만 1세	(현금) 50만원	0세반: (바우처) 54만원	(바우처) 전액
		1세반: 47만5천원+(현금) 2만5천원	

'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연령	일반가정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만원	15만 6천원	20만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 9천원	10만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25년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 금액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누리과정)	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적용시기	('25.1.1.~)	('25.1.1.~)	('25.1.1.~)	('25.1.1.~)	('25.1.1.~ 2.28.)	('25.3.1.~)	('25.1.1.~)
보육료 (일반, 다문화, 야간보육)	540,000원	475,000원	394,000원	280,000원	280,000원	330,000원	330,000원
장애아보육료	587,000원						
24시간 보육료	810,000원	712,500원	591,000원	420,000원			

※ 4세의 경우 '25년 3월부터 5만원 보육료·유아학비 추가지원으로 기존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지원액 인상

'25년 유치원 유아학비 등 지원 금액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3세반 (누리과정)	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3세반 (누리과정)	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적용시기	('25.1.1.~)	('25.1.1.~ 2.28.)	('25.3.1.~)	('25.1.1.~)	('25.1.1.~)	('25.1.1.~ 2.28.)	('25.3.1.~)	('25.1.1.~)
유아학비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50,000원	280,000원	280,000원	330,000원	330,000원
방과후 과정비	50,000원				70,000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없음				최대 200,000원			

※ 4세의 경우 '25년 3월부터 5만원 보육료·유아학비 추가지원으로 기존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지원액 인상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 연장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일반아동	1시간당 4천원	월 24만원 (60시간)
장애아동	1시간당 5천원	월 30만원 (60시간)

※ 달별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가정양육수당, ④ 부모급여, ⑤ 아동수당 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을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2023년 8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는 월령이 11개월이었으며, 2025년 6월 기준 월령은 22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반면, 2023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 월령이 16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5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4년 7월	24년 8월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첫째 자녀	기관 이용	- 24개월 이상 -													
		① 어린이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치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당 급여	③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 천원													
	- 0~23개월 -														
	④ 부모 급여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택1 체크

택1 체크

택1 체크

※ 달별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가정양육수당, ④ 부모급여, ⑤ 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2023년 8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는 월령이 11개월이었으며, 2025년 6월 기준 월령은 22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반면, 2023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 월령이 16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5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4년 7월	24년 8월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돌 째 자 녀	기관 이용	- 24개월 이상 -												택1 체크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 당 급 여	③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input type="checkbox"/>												
		() 천원													
	- 0~23개월 -														
	④ 부 모 급 여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 아 동 수 당	<input type="checkbox"/>														

※ 달별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가정양육수당, ④ 부모급여, ⑤ 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2023년 8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는 월령이 11개월이었으며, 2025년 6월 기준 월령은 22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반면, 2023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 월령이 16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5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4년 7월	24년 8월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셋째 자녀	기관 이용	- 24개월 이상 -												택1 체크		
		① 어린이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치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당 급여	③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 천원														
		- 0~23개월 -														
	④ 부모 급여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 달별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가정양육수당, ④ 부모급여, ⑤ 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2023년 8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는 월령이 11개월이었으며, 2025년 6월 기준 월령은 22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반면, 2023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 월령이 16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5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4년 7월	24년 8월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넷째 자녀	기관이용	- 24개월 이상 -												택1 체크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유치원	②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수당 급여	③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 천원												
	④ 부모 급여	- 0~23개월 -												택1 체크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 달별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가정양육수당, ④ 부모급여, ⑤ 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2023년 8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는 월령이 11개월이었으며, 2025년 6월 기준 월령은 22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반면, 2023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 월령이 16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5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4년 7월	24년 8월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다 섯 째 자 녀	기 관 이 용	- 24개월 이상 -													
		① 어 린 이 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 당 급 여	③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 천원												
		- 0~23개월 -													
	④ 부 모 급 여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 아 동 수 당	<input type="checkbox"/>														

택1
체크

택1
체크

택1
체크

※ 달별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가정양육수당, ④ 부모급여, ⑤ 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2023년 8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는 월령이 11개월이었으며, 2025년 6월 기준 월령은 22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반면, 2023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에 월령이 16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5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4년 7월	24년 8월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여 섯 째 자 녀	기 관 이 용	- 24개월 이상 -													
		① 어 린 이 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 당 급 여	③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 천원												
		- 0~23개월 -													
	④ 부 모 급 여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 아 동 수 당	<input type="checkbox"/>														

택1
체크

택1
체크

택1
체크

문11.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4.7.1.~2025.6.30.)**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육아휴직급여 총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 수급 가능 기간은 자녀별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입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겹치지 않는 기간으로 합산하고, 수급액도 부모 모두의 급여액을 합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 **육아휴직 급여:**
- 2024년 기준(2024.7.1.~2024.12.31.):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 2025년 기준(2025.1.1.~2025.6.30.): 1년 이내(최대 1년 6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액: 월 2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월 16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연장된 6개월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만 해당함.
-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450만원)하여 지급함.
- 24년 1월부터 시행.**
-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2024년 기준(2024.7.1.~2024.12.31.):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급함.
 - 2025년 기준(2025.1.1.~2025.6.30.):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을 지급함.

구분	문11. 육아휴직급여 수혜 경험	문11-1.	문11-2. 총 수급액	문11-3. 총 수급기간
		육아휴직급여특례 수혜 경험 ※ 1, 2번 중복응답 가능		
첫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3.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둘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3.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셋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3.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구분	문11. 육아휴직급여 수혜 경험			
	문11-1. 육아휴직급여특례 수혜 경험 ※ 1, 2번 중복응답 가능	문11-2. 총 수급액	문11-3. 총 수급기간	
넷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3.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다섯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3.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여섯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3.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문12. [2022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만 응답] 귀택에서 **지난 1년간(2024.7.1.~2025.6.30.)**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총 수급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첫만남 이용권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후 12개월까지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2. 없음					

문13.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4.7.1.~2025.6.30.)**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지자체 출산지원금 총 수급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2. 없음					
총 수급액	() 만원					

문14.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출산 지원금, 육아수당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14-1
2. 없음 → 문15

문14-1.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4.7.1.~2025.6.30.)** 현재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출산지원금, 육아수당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총 얼마를 받으셨는지요?

※ 월마다 10만원씩 12개월 지원받는 경우: 기간 내 총 수급액 120만원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2. 없음					
총 수급액	() 만원					

문17. 2025년도에 받으신 연말정산(2024.1.~2024.12.에 대한 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원 금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 여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된 경우 자녀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구분	수혜 여부	지원 금액 인지 여부	지원 대상자 (모두 선택)
1. 자녀 세액 공제	1-1. 기본 공제 대상 자녀 1. 지원받음 → 문17-2 2. 지원받지 않음 → 문18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 문17-3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 문17-3	
	1-2.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 지원받음 → 문17-2 2. 지원받지 않음 → 문18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 문17-3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 문17-3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2. 자녀장려금	1. 지원받음 → 문17-2 2. 지원받지 않음 → 문18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 문17-3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 문17-3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3.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1. 지원받음 → 문17-2 2. 지원받지 않음 → 문18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 문17-3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 문17-3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II. 가구의 지출 및 양육비용

문18~19. 귀댁의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작성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자녀별 지출 비용은 미취학 자녀뿐만 아니라 가구 내 전체 자녀에 대해 응답하며, 자녀별 지출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렵하여 응답하되,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0원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녀별 금액이 나누어지지 않은 금액(예: 가족 외식비 등)도 자녀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18.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19. 가구 소비액 중 자녀 별로 지출액 (*자녀별로 모두 기재, 없으면 0 기재)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식비 (외식비 포함)	가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은 포함 하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 외식비	부모가 직장에서 사먹는 점심값 포함, 커피값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주거/관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을 합산	만원	/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단,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포함	만원						
2-2. 월세	주거를 위해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출 해야 하는 비용(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만원						
3. 기기/집기	가구, 가전 등의 구매 (아동 침대, 책상 등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1. PC/노트북/ 태블릿PC		만원	/					
4. 피복비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침구류 포함	만원						
5. 보건/의료비	병원, 약 구매비, 비타민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제(홍삼, 한약 등 포함), 마스크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18.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19. 가구 소비액 중 자녀 별로 지출액 (*자녀별로 모두 기재, 없으면 0 기재)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6. 교육/보육비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비용,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사교육 이용 비용 등 교재 교구 포함), 자녀 셔틀버스 비용, 육아도우미 비용, 자녀 돌봄의 대가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등 포함 ※ 정부지원금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 여가 및 문화 생활비(교양/오락비)	완구(장난감, 모빌 등), 여가용 도서 구입비, 가족여행 등 포함. 단, 교재교구는 교육비로 포함	만원											
7-1. 가족여행 등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경우, 사용한 비용 전액	만원											
7-2. 관람, 체험학습	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3. 완구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4. 도서구매	교재 교구는 제외. 아동 전집류 등은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8. 교통비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동차 구입비 제외. 자녀의 셔틀버스 비용은 교통비가 아닌 교육비에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 통신비	핸드폰 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IPTV 및 케이블 TV 수신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1. 휴대전화비	휴대폰 구입비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목욕용품, 바디로션, 기저귀, 물티슈, 세탁용품, 주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올, 이마용 서비스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 금융상품 (저축 및 보험 납입금)	이자, 저축, 보험 등(자녀 명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1. 저축	예금, 적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2. 보험	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3. 원금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원금 상환액	만원											
11-4. 이자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이자 납입금	만원											
11-5. 주식, 암호화폐	주식, 암호화폐(코인) 투자금	만원											
12. 이전 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자녀 돌봄의 대가로 드리는 용돈은 보육비로 분류하고 제외, 가족 내 이전지출은 제외)	만원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반려동물 입양비용은 제외함	만원											
1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우미 등 ※ 육아도우미는 교육/보육비에 포함	만원											



IV. 저소득 가구 정책

문26~26-1. 아래의 저소득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수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소득 가구 대상 지원 정책	문26. 인지 여부			문26-1. (인지자만 응답) 수혜 여부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음 → 문26-1	들어만 봤음 → 문26-1	모름 → 문27	수혜받은 적이 있음	수혜 받은 적이 없음
	1	2	3	1	2
1. 영양플러스					
2.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3.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자기부담금 비용 비원, 가·다형에 한함)					
4.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5. 디딤씨앗통장					
6. 전기요금 감면					
7. 이동통신요금 감면					
8. TV 수신료 감면					
9. 상하수도요금 감면					
10. 에너지 바우처 지급					
11. 도시가스요금 감면					
12.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표〉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 현황: 중앙부처 지원 사업

제도명	제도 설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주무 부처
영양플러스	영양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영양 상태 유지와 개선을 돕기 위한 국가 영양지원 프로그램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6세까지)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영아(0~24개월)를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보건복지부

문27-1. [문27에서 3 이상에 응답한 경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 어떤 비목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식비 (외식비 포함) | 8. 교통/통신비 |
| 2. 주거/관리비 (월세, 수도/광열비 등) | 9.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
| 3. 기기/집기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 4. 피복비 | 10.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
| 5.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황 |
| 6. 교육/보육비 (육아도우미 비용 포함) | 12. 기타() |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 |

[부스터 샘플 전체 응답]

[기존/대체/신생아 가구 중 문5에서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경우 응답 OR

문 26-1 사업 중 하나라도 수혜하는 경우 응답]

문28.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큰 우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주된 우려사항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1. 필요한 물품이나 활동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까 봐 우려됨
2.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성장이나 건강에 지장이 생길까 봐 우려됨
3.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됨
4. 학업 성적이 또래보다 뒤처질까 봐 걱정됨
5. 또래로부터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할까 봐 걱정됨
6. 기타()



V. 영유아 가구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개별 돌봄 서비스]

문29. 귀댁 자녀를 위해 최근 3개월 내 다음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9-1로
2. 아니요 → 문30으로

〈개별돌봄서비스 종류〉	
①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② 민간 육아도우미 (학습시터, 놀이시터 등도 포함)
③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삼촌, 이모, 고모 등)

문29-1.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 각각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해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자녀의 외할머니가 오전에, 친할머니가 오후에 자녀를 돌보아주시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③ 조부모' 돌봄으로 적어 주십시오.

※ 학습(혹은 놀이)과 돌봄서비스를 결합하여 시간제로 아이를 돌보아주는 서비스(자란*, **약어, 핀덴** 등)를 이용하는 경우는 민간 육아도우미로 응답해 주십시오. 다른 경로로 여러 명의 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을 모두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9-2.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돌보고 있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29-3.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비용은 월 평균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만 응답해 주십시오. 별도로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0'을 적어주십시오.

문29-4. 해당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 자녀를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고 가사일을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29-1 보기]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① 정부 지원 아이돌봄비 (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② 민간 육아도우미

③ 조부모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문29-1. 개별돌봄 서비스제공자	문29-2. 동시 돌봄 자녀 (모두 선택)	문29-3. 이용 비용	문29-4. 돌봄서비스제공의 노동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문39-1에서 하나라도 ② 민간 육아도우미 선택 시 문39-5 응답

문29-5. [문29-1에 ②를 응답한 경우] 민간육아도우미는 어떤 경로로 구하셨습니까?

1. 사설인력전문소개업소
2. 지인소개
3. 구직광고 (지역신문 등)
4. 인터넷 기반 돌봄서비스플랫폼 (*씨터, *터넷, 자란*, **악어, 핀덴** 등)
5. 여성인력 교육·훈련기관
6. 기타



VI.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 지원 서비스

[가정 내 양육 지원_부모 직접 돌봄]

문30. 최근 한 달 동안(만약 방학 기간이라면 방학 전 한 달)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부모가 직접 돌보지 않더라도 **아이가 가정 내 머물렀던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 자녀의 야간 수면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30-1. 평일 가정 내 양육시간	문30-2. 주말 가정 내 양육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문31. 귀댁의 자녀가 가정 내 머무르는 동안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함께 계셨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최근 한 달 동안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31-1. 평일 부모 직접 돌봄시간	문31-2. 주말 부모 직접 돌봄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문34.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육아 관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1. 장난감 대여 2. 도서 대여

문34-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34-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34-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34-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 서비스 종류	문34. 이용 여부	문34-1. 이용 빈도	문34-2. 제공기관 (중복 선택 가능)	문34-3. 이용 비용	문34-4. 이용 만족도
장난감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시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 월 만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도서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시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 월 만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35.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혹은 활동)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1.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장난감, 도서, 놀이키트, 만들기 키트, 문구류 등)

문35-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35-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35-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35-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 서비스 종류	문35. 이용 여부	문35-1. 총 이용 횟수	문35-2. 제공기관 (중복 선택 가능)	문35-3. 이용 비용	문35-4. 이용 만족도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1. 이용함 → 2. 이용안함	최근 3개월간 총 ()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월 () 만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36. 귀하는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 육아 꾸러미 제공 등과 같은 육아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	-----------------------	-----	-----------------------

1.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배송 서비스 포함)
2.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3.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 (온라인 수업 포함)
4.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5.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6.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7.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8. 기타 ()

항목	부모교육	부모 상담	육아 멘토 (예: 보육반장 등)
문37. 이용 여부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문37-1. 이용 횟수	총 () 회	총 () 회	총 () 회
문37-2. 제공기관 (보기 참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37-3. 비대면 서비스 여부	1. 대면 2. 비대면 3. 대면+비대면	1. 대면 2. 비대면 3. 대면+비대면	1. 대면 2. 비대면 3. 대면+비대면
문37-4. 서비스 내용 (보기 참조)	1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37-5. 유료서비스 여부	1. 유료 2. 무료	1. 유료 2. 무료	1. 유료 2. 무료
문37-6.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38. 귀하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과 같은 부모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	-----------------------	-----	-----------------------

- | | |
|-----------------------|--------------------------------------|
| 1. 일대일 서비스 확대 (맞춤서비스) | 7.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
| 2. 쌍방향 서비스 확대 | 8.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대 확대 혹은 변경 |
| 3. 프로그램 확대 | 9.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
| 4.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 개선 | 10. 기타 () |
| 5.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 11. 개선 필요 사항 없음 |
| 6.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



Ⅶ.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 문39~42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4.7.1.~2025.6.30.)까지 임금 근로자로 일자리가 있었던 본인/배우자의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는 제외)

※ 일자리가 없었던 경우,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는 문43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문07~08. 부모 근로형태 확인

구분	문07. 모(어머니)	문08. 부(아버지)
⑤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39-1~39-2.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4.7.1.~2025.6.30.)까지 귀댁 영유아의 부모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39-1. 모(어머니)		문39-2. 부(아버지)	
1. 출산휴가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육아휴직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 주당 ()시간으로 단축	

문39-3~39-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제도를 활용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구분	문39-3. 모(어머니)					문39-4. 부(아버지)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문39-5~39-6.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응답] 귀댁 영유아의 부모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 | |
|-----------------------|----------------------------|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8. 기타 |

구분	문39-5. 모(어머니)	문39-6. 부(아버지)
1. 출산휴가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2. 육아휴직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문40-1~40-2.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4.7.1~2025.6.30.)까지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은 영유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용하셨다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휴직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1.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연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
| 2. 가족돌봄휴가제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연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 |
|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주당 15~30시간만 일하는 경우. 단축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 |

구분	문40-1. 모(어머니)	문40-2. 부(아버지)
1. 가족돌봄휴직	1. 있음 → 총()일 2. 없음	1. 있음 → 총()일 2. 없음
2.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포함)	1. 있음 → 총()일 2. 없음	1. 있음 → 총()일 2. 없음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문40-3~40-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문40-3. 모(어머니)					문40-4. 부(아버지)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가족돌봄휴직										
2.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포함)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문40-5~40-6.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응답] 귀댁 영유아의 부모님은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 | |
|-----------------------|----------------------------|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8. 기타 |

구분	문40-5. 모(어머니)	문40-6. 부(아버지)
1. 가족돌봄휴직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2.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포함)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문41-1~41-4. 자녀 돌봄을 위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육아 시간 지원 제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4.7.1.~2025.6.30.)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문39~40에서 응답한 법적 보장 제도 및 휴가는 제외

[모(어머니)]

구분	문41-1. 제도 유무(어머니)	문41-2. 이용 경험 유무(어머니)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41-2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2. 육아 휴직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41-2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2. 없음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1. 있음 → 문41-2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2. 없음

[부(아버지)]

구분	문41-3. 제도 유무(아버지)	문41-4. 이용 경험 유무(아버지)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41-4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2. 육아 휴직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41-4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2. 없음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1. 있음 → 문41-4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2. 없음

문41-5~41-6.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문41-5. 모(어머니)					문41-6. 부(아버지)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적 보장 기간 이상)										
2. 육아 휴직 (법적 보장 기간 이상)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문42-1~42-2.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4.7.1.~2025.6.30.)까지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
은 아래에 제시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유연근무제도 유형〉	
1. 재택근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업무
2. 시차출퇴근:	하루 중 출퇴근 시간 조절하여 업무
3. 선택적 근무시간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
4.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컴퓨터나 기기를 활용해 근무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6. 탄력근무제:	일이 많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줄여 소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무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 재량근무: 소정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구분	문42-1. 모(어머니)	문42-2. 부(아버지)
1. 재택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시차출퇴근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4. 원격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6. 탄력적 근무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7. 기타 유형 (재량근무 등)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문42-3~42-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문42-3. 모(어머니)					문42-4. 부(아버지)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재택근무										
2. 시차출퇴근										
3. 선택적 근무시간제										
4. 원격근무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6. 탄력적 근무제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문42-5~42-6.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 | |
|-----------------------|----------------------------|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8. 기타 |

구분	문42-5. 모(어머니)								문42-6. 부(아버지)							
1. 재택근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								↓							
	기타 ()								기타 ()							
2. 시차출퇴근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								↓							
	기타 ()								기타 ()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								↓							
	기타 ()								기타 ()							
4. 원격근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⑥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								↓							
	기타 ()								기타 ()							

구분	문42-5. 모(어머니)	문42-6. 부(아버지)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8"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8"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6. 탄력적 근무제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8"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8"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8"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8"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문43. 현행 부모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육아 시간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1순위 정책	<input type="radio"/>	2순위 정책	<input type="radio"/>
--------	-----------------------	--------	-----------------------

- | | |
|----------------|---------|
| 1. 가족돌봄휴직/휴가 | 4. 출산휴가 |
| 2. 육아휴직 | 5. 유연근무 |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문43-1. 문43에서 선택하신 제도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1.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2.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3. 신청 절차의 간소화
4.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 (정부가 강제)
5. 자격해당자의 확대 (예: 프리랜서도 적용)
6.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예: 만 8세 → 만 12세까지 신청 가능)
7.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8. 기타 ()



Ⅷ.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삶의 만족도

※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문44. 귀댁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 지원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2. 개별 돌봄 서비스
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4.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5.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6.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양육 물품 지원

문45.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 사회적 친분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가구의 경제적 수준	1	2	3	4	5
2) 여가생활	1	2	3	4	5
3) 주거환경	1	2	3	4	5
4) 가족관계	1	2	3	4	5
5) 자녀돌봄(양육)	1	2	3	4	5
6) 사회적 친분관계	1	2	3	4	5
7) 자아성취	1	2	3	4	5
8)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	2	3	4	5

문46. 본인 결혼 당시와 현재 사회경제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 10년에는 어떤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일 거라 예상하십니까?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위치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치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치	
상층	① 상상	상층	① 상상	상층	① 상상
	② 상중		② 상중		② 상중
	③ 상하		③ 상하		③ 상하
중층	④ 중상	중층	④ 중상	중층	④ 중상
	⑤ 중중		⑤ 중중		⑤ 중중
	⑥ 중하		⑥ 중하		⑥ 중하
하층	⑦ 하상	하층	⑦ 하상	하층	⑦ 하상
	⑧ 하중		⑧ 하중		⑧ 하중
	⑨ 하하		⑨ 하하		⑨ 하하

※ 영유아 자녀용 설문은 **아동 단위로 응답**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9~2025년 출생)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영유아 자녀용	총 자녀 수	자녀 번호	해당 자녀 출생순위	1. 첫째	4. 넷째	해당 자녀 출생연월	()년 ()월 생
				2. 둘째	5. 다섯째		
				3. 셋째	6. 여섯째		

*가구용 설문 2페이지 참조하여 일치하도록 기입



1. 영유아 자녀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9~2025년 출생)의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녀 수만큼 반복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01.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한 달 내에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중 이용한 육아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용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한 달 이내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어린이집 → 문02 응답 후 1-1. '어린이집' 설문으로
- 2. 유치원 → 문02 응답 후 1-2. '유치원' 설문으로
- 3.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유아스포츠탄, YMCA 등) → 문02 응답 후 1-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 4. 반일제 이상 기타 기관 → 문02 응답 후 1-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 5.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한 적 없음 → 문02 응답 후 1-4. '문화센터' 설문으로

[★모든 영유아 응답]

문02.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3개월 이내 다음의 육아서비스 중 이용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각 서비스에 대해 이용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축구클럽 등의 수업은 학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 여부
① 문화센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② 예체능학원 (태권도, 수영, 축구교실, 발레, 피아노, 미술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③ 학습관련 학원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④ 기타 교육서비스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문07-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대기가 길어서 등)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예: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8.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 어린이집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I-4. 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1-2. 유치원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08.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국·공립 2. 사립

문09. 평상시에 이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기관에서 나오는 시각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오후 2시 → 14시)

등원시각	하원시각
()시 ()분	()시 ()분

문09-1. 이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응답한 방법으로 등하원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과 평균적인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다만 놀이터나 학원 등 다른 곳을 경유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만 응답해 주십시오.

방법 보기:

- | | |
|----------------|--------------------|
| 1.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 3. 보호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
| 2.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 4.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 |

등원방법	등원까지 걸리는 시간 (집 → 기관)	하원방법	하원하여 걸리는 시간 (기관 → 집)
()	()분	()	()분

문12-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코로나19로 운영 중단, 대기가 길어서 등)
4.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예: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8.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 유치원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1-4. 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I-3.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3.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영어학원 (키즈칼리지, YBM, ECC, SLP 등)
2. 예능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
3. 놀이학원 (크라벨, 위버지니어스, 하바 등)
4. 체육학원 (YMCA 아기스포츠타, 유아체육단 등)
5. 기타 ()

문14. 평상시에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시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기관에서 나오는 시각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오후 2시 → 14시)

등원시각	하원시각
()시 ()분	()시 ()분

문14-1. 이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응답한 방법으로 등하원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과 평균적인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다만 놀이터나 학원 등 다른 곳을 경유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만 응답해 주십시오.

방법 보기:

- | | |
|----------------|--------------------|
| 1.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 3. 보호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
| 2.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 4.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 |

등원방법	등원까지 걸리는 시간 (집 → 기관)	하원방법	하원하여 걸리는 시간 (기관 → 집)
()	()분	()	()분

문15.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5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15-1~15-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는 현재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항목	문15. 비용	문15-1. 운영 여부	문15-2. 참여 과목 수
1. 수업료	월 ()원	↙	↘
2. 그 밖의 비용 (교재교구비, 재료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 현장학습비, 행사비, 입학금, 원복비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제외)	월 ()원		
3.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	월 () 개
4.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 비용을 기입해 주세요)	월 ()원	↘	↘

문16. 이용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17.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I-4. 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I-5. 학원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9. 지난 3개월 동안 자녀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0으로
2. 아니요 → I-6.기타 교육서비스로

※ 영유아용 설문 문02의 '② 예체능학원(태권도·수영·축구교실·발레·피아노·미술 등)' 또는 '③ 학습 관련 학원(영어·수학·국어·과학 등)'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20.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은 어떤 종류의 학원입니까?

문20-1. 몇 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20-2~20-4. 해당 학원의 주당 이용 횟수와 이용 시간과 월 이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해당 유형별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닐 경우 이용 횟수와 이용 시간은 유형별로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2025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문20. 이용 여부	문20-1. 이용개수	문20-2. 이용 횟수	문20-3. 이용 시간	문20-4. 이용 비용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영어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한글, 한자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수학 및 과학 관련(수, 주 산, 과학실험, 로봇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기타 (바둑, 웅변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문21.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비용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22.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I-6. 기타 교육서비스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23.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아래의 기타 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기타 사교육: 일회성, 단발성 이용(예: 일회성 체험활동 등)이 아닌 경우에 한함
1. 방문형 학습지(선생님이 직접 학습지를 들고 방문해서 수업 및 채점 등을 진행)
 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이 직접 장난감이나 퍼즐 등 교구를 들고와서 함께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의 방문 없이 택배나 우편으로 학습지 또는 교구를 받는 경우, 전화/화상 영어 등)
 4. 그룹활동 및 개인지도(축구, 미술, 피아노, 한글, 영어 등 과외)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수업하는 것)
 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1. 예 → 문23-1로
 2. 아니요 → I-7.시간제보육(일시보육)으로

※ 영유아용 설문 문02의 '④ 기타 교육서비스'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23-1~23-5. 이용하시는 기타 교육서비스의 유형별로 이용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기타 교육서비스의 종류와 월 평균 총 이용 비용,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2가지 이상의 방식의 섞여 있는 서비스의 경우 보다 주된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응답해 주십시오.

(예: 방문형 학습지인데,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듣기 파일이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경우 → 방문형 학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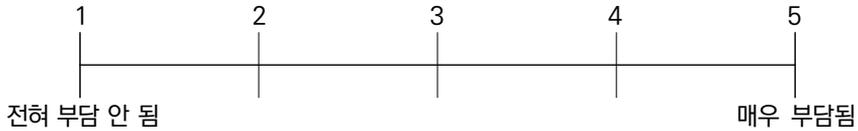
※ 이용하시는 기타 교육서비스가 여러 개인 경우 아래 표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문23-1 보기] 기타 교육서비스 종류	
1.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6. 기타 다른 언어 (한자, 일본어 등)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7. 수학 및 과학 관련 (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8. 종합교과
4. 영어	9. 기타 (바둑, 웅변 등)
5. 한글	

유형	문23-1. 종류	문23-2. 이용 시간	문23-4. 이용 비용	문23-5.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방문형 학습지	(<input type="radio"/>)	주 ()분	월 총 ()만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input type="radio"/>)	주 ()분	월 총 ()만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input type="radio"/>)	주 ()분	월 총 ()만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4.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	(<input type="radio"/>)	주 ()분	월 총 ()만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input type="radio"/>)	주 ()분	월 총 ()만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input type="radio"/>)	주 ()분	월 총 ()만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 문24는 학원 및 기타 교육서비스(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제외)를 하나라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9=1 응답자 or 문23=1 응답자 중 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제외]를 하나라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문24. 현재 자녀를 위해 이용하시는 사교육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문24-1. [문24에서 부담된다(4 또는 5)라고 응답한 경우]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2.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
3.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4.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5.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6.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7.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8. 아이가 원해서
9. 기타()



1-7.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25.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5-1로
2. 아니요 → 문26으로

문25-1.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용한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어린이집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기타 ()

문25-2.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월 평균 몇 회 이용하였습니까?

월 평균 () 회

문25-3.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 이용 시 1회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하였습니까?

1회 평균 () 시간

문25-4. 자녀를 위한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 만원 이하 반올림, 정부지원금 제외

월 평균 () 만원

문25-5. 자녀를 위해 이용한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 |

문26. 어린이집은 0~2세 정규 보육반에 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때 이 자리를 시간제(일일 3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이용 경험 있음 → 문26-1로
- 2. 잘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 문27로
- 3.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 문27로
- 4. 전혀 모름 → 문27로

문26-1. (시간제보육 통합반 이용 경험자) 이용한 시간제 보육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1-8. 기타서비스(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등)

※ 다음은 기타서비스 중 키즈카페 혹은 비정기 체험활동(예: 숲체험, 요리체험, 박물관견학, 직업체험 등)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p>문27. 이 자녀를 위해 지난 3개월 이내에 키즈카페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놀이체험)도 포함해서 이용 경험을 응답해 주십시오.</p> <p>1. 예 → 문27-1로 2. 아니요 → 문28로</p>	<p>문29. 이 자녀를 위해 지난 3개월 이내에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p> <p>1. 예 → 문29-1로 2. 아니요 → 문30으로</p>
<p>문27-1. 키즈카페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3개월 총 () 회</p>	<p>문29-1. 비정기 체험활동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3개월 총 () 회</p>
<p>문27-2. 키즈카페 1회 이용 시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회 ()시간 이용</p>	<p>문29-2. 비정기 체험활동 1회 이용 시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회 ()시간 이용</p>
<p>문27-3. 키즈카페의 시간당 이용 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시간 당 ()원 ※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 시간으로 나눠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키즈카페는 영유아 입장료만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 입장료 및 식음료 비용 제외</p>	<p>문29-3. 비정기 체험활동의 회당 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회 당 ()원 ※ 체험활동은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입장료 등을 모두 포함</p>
<p>문27-4. 키즈카페의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p> <p>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p>	<p>문29-4. 비정기 체험활동의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p> <p>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p>
<p>문27-5.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3.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4. 아이가 좋아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7. 기타()</p>	<p>문29-5.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3.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4. 아이가 좋아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7. 기타()</p>

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p>문28. (지난 3개월간)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2. 감염병 위험 때문에 3.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4.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6. 기타 () 	<p>문30. (지난 3개월간)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2. 감염병 위험 때문에 3.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4.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6.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여 기 간:** 조사는 2025년 7월~10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1회 조사 참여를 요청받을 것입니다.
- **장 소:** 귀댁 또는 귀하가 편하게 조사에 응하실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해 주시면 그 장소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본 조사에서는 참여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경우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조사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영유아 수 1명당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귀하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높아질 수 있으며, 국가의 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조사는 설문 응답 시간이 40분 이상으로 다소 길고 상세한 가계소득과 지출액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취업 관련 정보, 연락처, 자녀 수 등의 정보입니다. 연락처는 사례비 지급, 응답자 관리, 응답 정보 확인 등에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기타 수집된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익명화된 상태에서 사용되며,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 조사업체 데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진과 조사업체 담당자는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2032년까지 보관되며, 이후 폐기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나 조사를 중단할 경우 조사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단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만일 귀하가 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조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 문의:** 연구 참여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구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책임연구자: 최효미 전화번호: 02-398-7771, 이메일: hmchoi@kicce.re.kr

*근무시간(09:00~18:00) 외 전화하실 경우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한국리서치 담당자: 김지은 책임, 전화번호: 02-3014-1055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육아정책 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398-7783 kicceirb@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계획서에 대한 심의 그리고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귀하가 이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예정이며,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5” 참여 동의서 - 영유아 가구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연구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인정보 제외)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 처리 후 익명화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명	연구 참여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날짜	확인
				(서명/인)

*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

조사원 또는 책임자	성명	날짜	확인	(서명/인)

-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육아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 **대 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전국 대표 표집을 통해 추출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약 1,830여 가구로, 가계 지출과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등 영유아의 양육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 혹은 부모님을 대신해 주양육자로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분입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귀하의 가구는 임의 추출된 조사구에 속한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원칙적으로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 조사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 조사원과의 상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 방법	절차
방문 (대면면접조사)	- 대면면접조사원이 패널가구와 미리 조사 일정을 조율 후 약속된 일정에 가구(또는 응답자가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원이 설문 문항에 대해 설명하며 조사를 실시
전화	- 패널가구가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을 해당 가구에 남겨둔 상태로,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정해진 약속된 일정에 대면면접조사원이 패널 가구로 전화하고, 조사원과 응답 가구와 설문을 동시에 보면서 전화로 조사
유치	- 패널가구 방문 또는 전화 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 가능 기간과 설문지 회수 일정을 정하여 설문지를 배송하고 회수일에 전용 회수용 봉투에 담아 패널 가구의 문앞 또는 우편함에 두면 면접원이 회수일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임.
방문 + 전화	- 대면조사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패널가구의 가용 시간 내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문항에 대해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임.
방문 + 유치	- 대면조사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패널가구의 가용 시간 내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수일을 정하여 설문지를 유치함.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한 후 전용 회수용 봉투에 담아 문앞이나 우편함에 두면 면접원이 회수일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임.
온라인(웹)	- 부스터 조사(저소득 가구)의 경우, 모집공고에 따라 참여한 가구들이 희망하는 경우 웹조사 링크를 전달하여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
기타	- 방문과 유치, 전화조사를 병행하거나, 유치와 전화조사를 병행하는 등 설문완료율을 위해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실시

본 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의 2종의 설문지로 구성되며, 아동조사는 귀하께서 영유아 자녀 별로 설문지에 각각 응답하여야 합니다. 본 조사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40분가량 소요되며(영유아가 1명인 경우), 가구 내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영유아 수에 따라 60분가량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 상권 -

